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19년도 당초예산 (18조 5,408억 7백만원) 대비 6.7% 증액(1조 2,419억 7천 9백만원)된 19조 7,827억 8천 6백만원임.

※ 2019년도 최종예산 21조 57억 1천만원 대비 5.8%가 감액된 수준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감		증 감 륜(%)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8,540,807	21,005,710	19,782,786	1,241,979	△1,222,924	6.7	△5.8
지방세 수입	17,785,836	18,221,310	19,552,425	1,766,589	1,331,115	9.9	7.3
지방세	17,785,836	18,221,310	19,552,425	1,766,589	1,331,115	9.9	7.3
보통세	15,859,908	16,295,382	17,495,135	1,635,227	1,199,753	10.3	7.4
목적세	1,704,361	1,704,361	1,835,212	130,851	130,851	7.7	7.7
지난년도수입	221,567	221,567	222,078	511	511	0.2	0.2
세외수입	754,970	640,701	228,657	△526,313	△412,044	△69.7	△64.3
경상적세외수입	58,384	58,384	56,917	△1,467	△1,467	△2.5	△2.5
재산임대수입	12,187	12,187	14,028	1,841	1,841	15.1	15.1
사용료수입	2,092	2,092	2,301	209	209	10.0	10.0
수수료수입	726	726	724	△2	△2	△0.3	△0.3
이자수입	43,379	43,379	39,864	△3,515	△3,515	△8.1	△8.1
입시적세외수입	696,586	582,317	171,740	△524,846	△410,577	△75.3	△70.5
재산매각수입	587,255	472,986	57,957	△529,298	△415,029	△90.1	△87.7
과장금및과태료등	679	679	680	1	1	0.1	0.1
기타수입	106,676	106,676	106,037	△639	△639	△0.6	△0.6
지난년도수입	1,976	1,976	7,066	5,090	5,090	257.6	257.6
보조금	0	1,789	1,704	0	△85	-	△4.8
국고보조금등	0	1,789	1,704	0	△85	-	△4.8
국고보조금	0	1,789	1,704	0	△85	-	△4.8
보전수입등및부채	0	2,141,910	0	0	△2,141,910	-	△100.0
보전수입등	0	2,141,910	0	0	△2,141,910	-	△100.0
잉여금	0	2,141,910	0	0	△2,141,910	-	△100.0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8,540,807	21,005,710	19,782,786	1,241,979	△1,222,924	6.7	△5.8
지방세수입	17,785,836	18,221,310	19,552,425	1,766,589	1,331,115	9.9	7.3
보통세	15,859,908	16,295,382	17,495,135	1,635,227	1,199,753	10.3	7.4
취득세	4,273,788	4,273,788	4,632,967	359,179	359,179	8.4	8.4
주민세	544,955	544,955	594,465	49,510	49,510	9.1	9.1
재산세	2,615,116	2,615,116	2,998,999	383,883	383,883	14.7	14.7
자동차세	1,132,092	1,132,092	1,104,975	△27,117	△27,117	△2.4	△2.4
레저세	131,021	131,021	124,873	△6,148	△6,148	△4.7	△4.7
담배소비세	565,175	565,175	564,349	△826	△826	△0.1	△0.1
지방소비세	1,359,199	1,794,673	2,041,427	682,228	246,754	50.2	13.7
지방소득세	5,238,562	5,238,562	5,433,080	194,518	194,518	3.7	3.7
목적세	1,704,361	1,704,361	1,835,212	130,851	130,851	7.7	7.7
지역자원시설세	284,868	284,868	300,925	16,057	16,057	5.6	5.6
지방교육세	1,419,493	1,419,493	1,534,287	114,794	114,794	8.1	8.1
지난년도수입	221,567	221,567	222,078	511	511	0.2	0.2
지난년도수입	221,567	221,567	222,078	511	511	0.2	0.2
세외수입 계	754,970	640,701	228,657	△526,313	△412,044	△69.7	△64.3
경상적 세외수입	58,384	58,384	56,917	△1,467	△1,467	△2.5	△2.5
재산임대수입	12,187	12,187	14,028	1,841	1,841	15.1	15.1
공유재산임대료	12,187	12,187	14,028	1,841	1,841	15.1	15.1
사용료수입	2,092	2,092	2,301	209	209	10.0	10.0
기타사용료	2,092	2,092	2,301	209	209	10.0	10.0
수수료수입	726	726	724	△2	△2	△0.3	△0.3
증지수입	726	726	724	△2	△2	△0.3	△0.3
이자수입	43,379	43,379	39,864	△3,515	△3,515	△8.1	△8.1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공공예금이자수입	39,200	39,200	35,404	△3,796	△3,796	△9.7	△9.7
기타이자수입	4,179	4,179	4,460	281	281	6.7	6.7
임시적세외수입	696,586	582,317	171,740	△524,846	△410,577	△75.3	△70.5
재산매각수입	587,255	472,986	57,957	△529,298	△415,029	△90.1	△87.7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87,255	472,986	57,957	△529,298	△415,029	△90.1	△87.7
과장금및과태료등	679	679	680	1	1	0.1	0.1
변상금	513	513	505	△8	△8	△1.6	△1.6
위약금	166	166	175	9	9	5.4	5.4
기타수입	106,676	106,676	106,037	△639	△639	△0.6	△0.6
체납처분수입	2	2	2	0	0	0.0	0.0
그외수입	106,675	106,675	106,035	△640	△640	△0.6	△0.6
지난년도수입	1,976	1,976	7,066	5,090	5,090	257.6	257.6
지난년도수입	1,976	1,976	7,066	5,090	5,090	257.6	257.6
보조금	0	1,789	1,704	1,704	△85	-	△4.8
국고보조금등	0	1,789	1,704	1,704	△85	-	△4.8
국고보조금	0	1,789	1,704	1,704	△85	-	△4.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2,141,910	0	0	△2,141,910	-	△100.0
보전수입등	0	2,141,910	0	0	△2,141,910	-	△100.0
잉여금	0	2,141,910	0	0	△2,141,910	-	△100.0

-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1조 3,311억 1천 5백만원(7.3%)이 증가하였고,
 - 지방세 중 보통세는 1조 1,997억 5천 3백만원(7.4%) 증가,
 - 목적세는 1,308억 5천 1백만원(7.7%) 증가,
 - 지난년도수입은 5억 1천 1백만원(0.2%)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은 4,120억 4천 4백만원(△64.3%)이 감소하였으며,
 -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6천 7백만원(△2.5%) 감소,
 - 임시적 세외수입은 4,105억 7천 7백만원(△70.5%) 감소하였음.
- 세입예산 항목별 2019년 예산 대비 주요증가 내역은
 - 보통세 중 취득세(3,592억원), 재산세(3,839억원), 지방소비세(2,468억원), 지방소득세(1,945억원)이며,
 - 목적세 중 지방교육세(1,148억원), 지역자원시설세(161억원)와
 -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18억원), 사용료수입(2억원)과
 - 임시적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51억원) 등이 증가함.
- 세입예산 과목별 2019년 예산 대비 주요감소 내역은
 -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자동차세(271억원), 레저세(61억원), 지방소비세(8억원)와,
 - 경상정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38억원)과,
 - 임시적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금(4,150억원) 및 기타수입-그외수입(6억원)과,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잉여금(2조 1,419억원) 등이 감소함.

2.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2조 7,089억 3천8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조 3,858억 9천6백만원 대비 13.5% 증액된 수준이며, 2019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5,251억 1천9백만원 대비 7.3%가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당초)	2020년도	2019년 대비 증 감	증감률	
총 계	2,385,896,257	2,708,938,567	323,042,310	13.5	
행정관리	소 계	765,002,457	842,232,668	77,230,211	10.1
	행정운영경비	736,925,071	785,482,133	48,557,062	6.6
	재무활동	-	8,270	8,270	순증
	사업비	28,077,386	56,742,265	28,664,879	102.1
교 부 금	1,620,893,800	1,866,705,899	245,812,099	15.2	

- 2020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9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백만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2,385,896	2,525,119	2,708,938	323,042	13.5
재무과 계	742,777	742,777	787,277	44,500	6.0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6,302	6,302	2,248	△4,054	△64.3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6,057	6,057	2,035	△4,022	△66.4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1,054	1,054	1,047	△7	△0.7
2018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32	232	218	△14	△6.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40	40	43	3	7.5
수입증지 인터넷 발급시스템 구축	337	337	-	△337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4,395	4,395	727	△3,668	△83.5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체계적인 계약제도 운영	244	244	213	△31	△12.7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0	20	21	1	5.0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16	116	101	△15	△12.9
서울계약바탕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07	107	91	△16	△15.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736,475	736,475	785,028	48,553	6.6
기본경비	1,540	1,540	1,757	217	14.1
기본경비	1,540	1,540	1,757	217	14.1
인력운영비	734,935	734,935	783,271	48,336	6.6
인력운영비(통합편성)	734,935	734,935	783,271	48,336	6.6
자산관리과 계	3,432	3,432	35,234	31,802	926.6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3,388	3,388	35,188	31,800	938.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3,388	3,388	35,188	31,800	938.6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700	700	33,218	32,518	4,645.4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2,617	2,617	1,879	△738	△28.2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71	71	91	20	28.2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자산관리과)	44	44	46	2	4.5
기본경비	44	44	46	2	4.5
기본경비	44	44	46	2	4.5
재무국 계약심사과	158	158	158	0	0.0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90	90	90	0	0.0
계약심사업무 전문성 강화	90	90	90	0	0.0
계약심사 업무추진	54	54	54	0	0.0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6	36	36	0	0.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계약심사과)	68	68	68	0	0.0
기본경비	68	68	68	0	0.0
기본경비	68	68	68	0	0.0
재무국 세제과	1,246,181	1,335,954	1,464,419	218,238	17.5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47	1,936	1,872	1,725	1,173.5
납세자 권리보호	137	137	152	15	10.9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12	112	142	30	26.8
마을세무사 운영	25	25	10	△15	△60.0
지방세제 개선	10	10	10	0	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0	10	10	0	0.0
세수증대 활동지원	-	1,789	1,710	1,710	순증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	1,789	1,710	1,710	순증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제과)	122	122	122	0	0.0
기본경비	122	122	122	0	0.0
기본경비	122	122	122	0	0.0
재무활동(재무국 세제과)	-	-	8	8	순증
보전지출(재무국 세제과)	-	-	8	8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	-	-	8	8	순증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1,245,912	1,333,896	1,462,417	216,505	17.4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제과)	1,243,665	1,331,649	1,459,998	216,333	17.4
재정보전금	1,243,665	1,331,649	1,459,998	216,333	17.4
출연(재무국 세제과)	2,247	2,247	2,419	172	7.7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247	2,247	2,419	172	7.7
재무국 세무과	385,677	435,126	414,258	28,581	7.4
시세입 목표달성	10,555	10,555	9,827	△728	△6.9
효율적인 세입관리	1,526	1,526	1,213	△313	△20.5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547	547	219	△328	△60.0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01	801	831	30	3.7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79	179	163	△16	△8.9
세수증대 동기부여	5,896	5,896	6,013	117	2.0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3	193	194	1	0.5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543	543	690	147	26.9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30	30	30	0	0.0
시세 세원발굴 지원	130	130	100	△30	△23.1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	5,000	5,000	5,000	0	0.0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사업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2,290	2,290	1,655	△635	△27.7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602	1,602	1,655	53	3.3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운영	23	23	-	△23	-
서울시 지방세 정보화 발전방안 컨설팅	664	664	-	△664	-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843	843	945	102	12.1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43	843	945	102	12.1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세무과)	141	141	142	1	0.7
기본경비	141	141	142	1	0.7
기본경비	141	141	142	1	0.7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374,982	424,431	404,288	29,306	7.8
자치구교부금(재무국 세무과)	374,982	424,431	404,288	29,306	7.8
시세 징수교부금	374,982	424,431	404,288	29,306	7.8
재무국 38세금징수과	7,671	7,671	7,593	△78	△1.0
조세정의 실현	7,596	7,596	7,517	△79	△1.0
강도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7,317	7,317	7,238	△79	△1.1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222	2,222	2,222	0	0.0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5,084	5,084	5,005	△79	△1.6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11	11	11	0	0.0
강도 높은 고액체납시세징수 지원	279	279	279	0	0.0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279	279	279	0	0.0
행정운영경비(재무국 38세금징수과)	75	75	76	1	1.3
기본경비	75	75	76	1	1.3
기본경비	75	75	76	1	1.3

II. 검토 의견

1 2020년도 경기전망

- 서울특별시 2020년도 예산은 2019년도 최종예산 대비 1.8%(7,054억원) 증액한 **39조 5,28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 2019년도 예산(당초: 35조 7,416억원, 최종: 38조 8,228억원)

- 서울시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완전돌봄체제 실현,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생활 SOC*확충 등 적극적인 재정투입에 따른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및 일자리 창출이 세입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있음.

*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경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 시설)

※ 재무국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7.3% 증액편성 하였음.

- 그러나, 2020년도 경제 여건은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 추세 등에 따른 세계교역조건 감소와 이로 인한 투자 감소 등 하향세가 지속되고, 대내적으로는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감소와 투자감소, 일본과 무역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금년보다 낮은 2% 초반으로 예상하는 등 세입 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기관별로 내년도 성장률은 정부 2.6%, 한국은행 2.2%, 국회 2.3%, KDI 2.5%, IMF 2.2%, OECD 2.3%를 예상하고 있음

〈주요 연구기관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2019~2020년)〉 (단위 : %)

구 분	정 부	KDI	한국은행	국 회	IMF	OECD
2019년	2.4~2.5	2.4	2.5	2.0	2.0	2.1
2020년	2.6	2.5	2.2	2.3	2.2	2.3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2019~2020년)〉 (단위 : %)

구분	IMF		OECD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성장률	3.0	3.4	2.9	3.0

- 지방세 수입과 관련, 최근 부동산 시장은 2017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지정,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 또한 최근 급등하고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 하였으나,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주택 감소를 우려하여 주택 가격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2020년은 정부의 정책목표와 달리 부동산 시장 과열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지방세 세입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재무국 취득세(부동산)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8.4% 증액편성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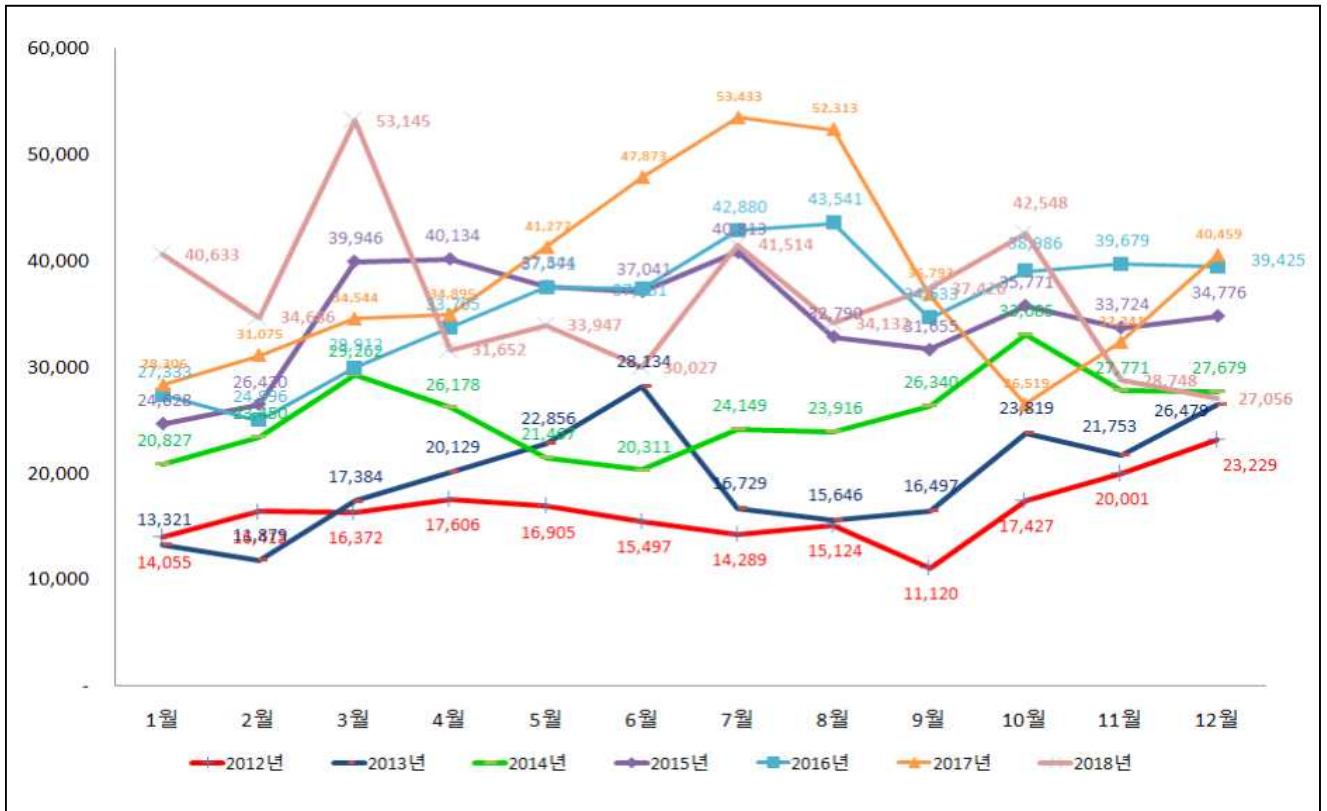
〈 2018년~2019년 발표된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요약 〉

-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18.8.27)
 - 투기지역 추가 지정(4개구) :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 이에 따라 서울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투기지역은 15개구로 확대
- 주택시장 안정 대책('18.9.13.)
 - 2주택 이상 세대의 주택구입이나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임대사업자 대출시 LTV를 80%에서 40%로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까지 인상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19.11.6.)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구 등 8개 구 27개동 지정
 - ※ 분양가 상한제 :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법

[최근 7년간 부동산거래 현황, 서울]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월계	14,055	16,413	16,372	17,606	16,905	15,497	14,289	15,124	11,120	17,427	20,001	23,229
	누계	14,055	30,468	46,840	64,446	81,351	96,848	111,137	126,261	137,381	154,808	174,809	198,038
'13년	월계	13,321	11,879	17,384	20,129	22,856	28,134	16,729	15,646	16,497	23,819	21,753	26,479
	누계	13,321	25,200	42,584	62,713	85,569	113,703	130,432	146,078	162,575	186,394	208,147	234,626
'14년	월계	20,827	23,450	29,262	26,178	21,467	20,311	24,149	23,916	26,340	33,085	27,771	27,679
	누계	20,827	44,277	73,539	99,717	121,184	141,495	165,644	189,560	215,900	248,985	276,756	304,435
'15년	월계	24,628	26,420	39,946	40,134	37,544	37,041	40,813	32,790	31,655	35,771	33,724	34,776
	누계	24,628	51,048	90,994	131,128	168,672	205,713	246,526	279,316	310,971	346,742	380,466	415,242
'16년	월계	27,333	24,996	29,912	33,705	37,471	37,381	42,880	43,541	34,633	38,986	39,679	39,425
	누계	27,333	52,329	82,241	115,946	153,417	190,798	233,678	277,219	311,852	350,838	390,517	429,942
'17년	월계	28,306	31,075	34,544	34,895	41,277	47,873	53,433	52,313	36,793	26,519	32,341	40,459
	누계	28,306	59,381	93,925	128,820	170,097	217,970	271,403	323,716	360,509	387,028	419,369	459,828
'18년	월계	40,633	34,686	53,145	31,652	33,947	30,027	41,514	34,132	37,426	42,548	28,748	27,056
	누계	40,633	75,319	128,464	160,116	194,063	224,090	265,604	299,736	337,162	379,710	408,458	435,514
'19년	월계	31,024	18,230	25,427	25,649	28,247	29,547	34,956					
	누계	31,024	49,254	74,681	100,330	128,577	158,124	193,080					



② 세입예산 검토

○ 2020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18조 5,408억 7백만원) 대비 6.7% 증액(1조 2,419억 7천 9백만원)된 19조 7,827억 8천 6백만원이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전년 최종 예산(21조 57억 1천만원) 대비 5.8% 감액된 수준임.

- 지방세 수입은 전년(최종 18조 2,213억 1천만원) 대비 7.3%(1조 3,311억 1천 5백만원) 증액된 19조 5,524억 2천 5백만원으로, 재무국 세입의 98.8%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전년(최종 6,407억 1백만원) 대비 64.3%(4,120억 4천 4백만원) 감액된 2,286억 5천 7백만원임으로, 재무국 세입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세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 감소에도 매매가 상승에 따라 취득세 3,592억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재산세 3,839억원, 세율 인상 및 소비 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소비세 2,468억원, 경제성장에 의한 법인 실적 개선에 따라 지방소득세 1,945억원, 본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1,148억원, 총급여 상승 등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에 따라 주민세 49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 자동차세 주행분 2018년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과다 교부에 따른 정산으로 270억원, 용산구 장외발매소 폐업 등에 따른 세입신장률 감소를 반영하여 61억원, 정부 금연정책 등에 따른 흡연을 감소가 예상되어 담배소비세는 8억원 등을 감액하여 편성 하였고,

※ 세외수입은 지가상승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18억원과 사용료수입 2억원, 사용료수입 등의 체납금 징수 전망에 따른 지난해도수입 51억원을 증액하고, 서울의료원 매각수입금 미편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금 4,150억원, 평잔 감소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37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보 통 세

○ 지방세 중 보통세는 전년 최종예산(16조 2,953억 8천 2백만원) 대비 7.4% 증액된 17조 4,95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지방세세입 예산의 89.5%(전년도 89.2%)를 차지하고 있음.

취 득 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의 취득 시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입으로 지방세세입의 23.7%(전년도 24.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전년 대비¹⁾ 8.4% 증액된 4조 6,329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취득세 중 부동산분은 전년 예산대비 11.1%(3,975억 8천 5백만원) 증액, 차량분은 5.8%(384억 6백만원) 감액한 규모임.

- ‘부동산분’의 경우 2019년 징수전망액을 기준으로 거래증감율(주택 △7.65%, 건물 △9.8%, 토지 13.5%), 매매가격 상승률(주택 8.80%, 건물 2.95%, 토지 5.22%)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 ‘차량분’의 경우 2019년 부과전망액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률(100.86%)과 징수율(99.89%)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1) 이하 전년도 대비 증감은 전년도 최종예산액과 비교한 증감 표시임.

○ 추계 방법은, 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부동산 정책환경과 유사한 과거 참여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비율(2008년~2009년 간 증감률)을 적용하고, 건물·토지에 대하여는 2019년 예상 증감률을 적용하여 거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의 경우는 최근2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하여 2019년 상승세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추계 방법

① 부동산 : 부동산을 유형별(주택, 건물, 토지)로 구분하고, '19년 전망액에 유형별 점유비, 매매가 증감율, 거래량 변동율 적용

- 유형별 점유비 : 최근 세입징수 추세가 반영된 최근 2년 평균 주택 (46.35%), 건물(44.87%), 토지(8.78%)의 점유비
- 매매가격 증감율 : 최근 매매가격 인상 추세가 반영된 최근 2년 평균 증감률 주택(8.80%), 건물(2.95%) 및 토지(5.22%) 적용
- 거래량 변동
 - ▶ (주택) 현 규제 정책과 유사한 참여정부의 '05 ~ '09년 간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여 '20년 추계에 반영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 정책 시행 초기인 '03년 이후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05년 초부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06년 하반기부터 과열 양상으로 전환됨.
- 정부는 시장 과열 시마다 후속 정책을 추가 시행

2003년	10.29대책	종합부동산세 도입(05년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투기지역 LTV규제 강화
2005년	8.31대책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9억→6억),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2006년	3.30대책	DTI 도입 (40%),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11.15대책	DTI 적용대상 지역 확대
2007년	1.11대책	분양가 상한제 전면 확대, 수도권 아파트 전매 제한

- 국내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 '07년 하반기 부터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 내년 주택 거래량은 감소세가 예상 되는데,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장 유사한 '08~'09년 간 평균 증감율을 적용

※ 07'년~'09년 주택 거래량 (단위: 건,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08~'09 평균
주택	건 수	207,928	196,581	177,265	186,923
	증감률	-24.40	-5.46	-9.83	-7.65

▶ (건물·토지) 건물은 '18년~'19년 중반까지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중이고, 토지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추세가 반영된 '19년 예상 증감율을 적용

※ '16년~'18년 건물 및 토지 거래량 (단위: 건,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건물	건 수	83,222	109,340	97,991	88,387
	증감률	4.5	31.4	-10.37	-9.8
토지	건수	28,763	29,072	30,300	34,391
	증감률	12.6	1.1	4.2	13.5

○ 산출 내역 : 4,013,624백만원

구분	'19년 전망액	유형별 점유비	거래량 신장율	매매가격 신장율	'20년 추계액
주택	4,065,536	46.35%	92.35%	108.80%	1,893,361
건물	4,065,536	44.87%	90.20%	102.95%	1,693,973
토지	4,065,536	8.78%	113.50%	105.22%	426,290

② 차 량 : 차량 등록대수 신장율 반영

- 자동차 등록대수 신장율은 매년 비슷하게 유지 되는 바, 최근 신장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3년 평균 차량 등록대수 신장율 적용

▶ 적용비율 : 101.01%(등록대수는 '18년 대비 약 3만대 증가 예상)

○ 산출 내역 : 619,343 백만원

'19년 부과전망액	X	등록대수 신장율	X	징수율	=	'20년 추계액
614,738 백만원		100.86%		99.89%		619,343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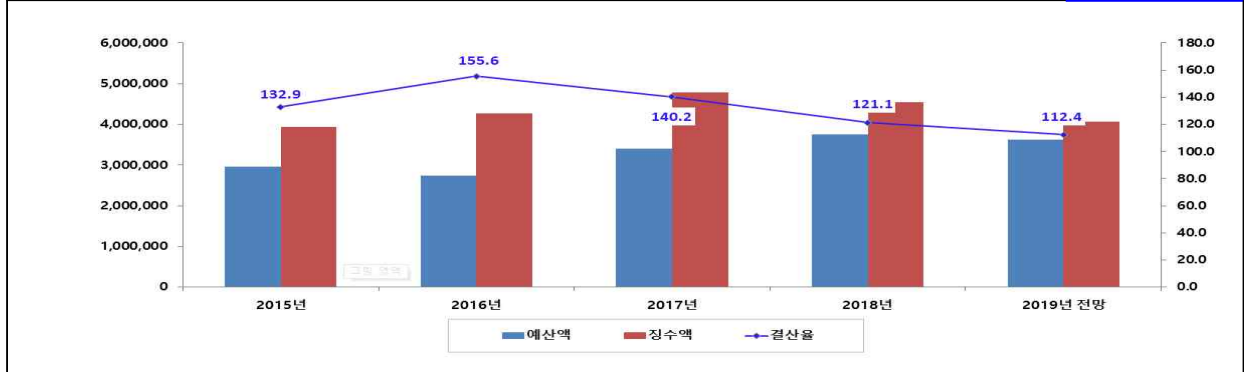
※ 부과전망액: 614,123(징수전망액) ÷ 99.9%(3년 평균 징수율) = 614,738 백만원

□ 최근 5년 취득세(부동산, 차량) 예산 및 결산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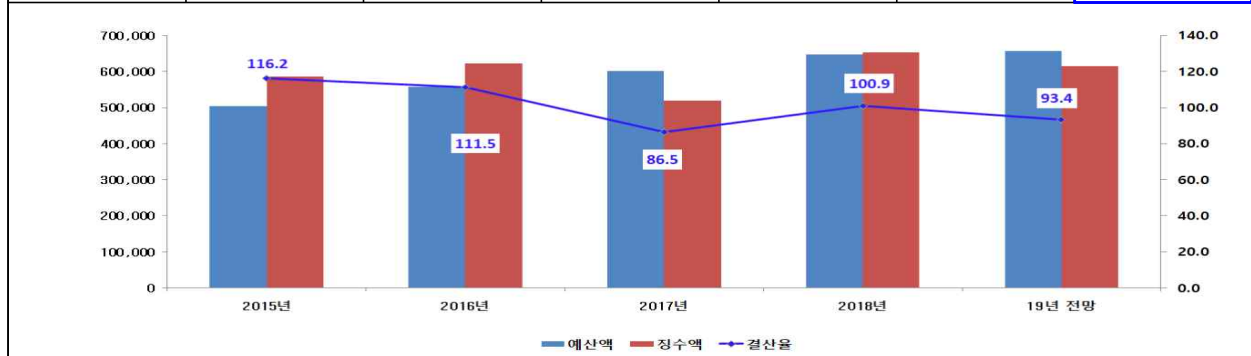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 산 액	2,966,662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징 수 액	3,941,660	4,269,792	4,775,578	4,539,452	4,065,536	
결 산 율	132.9	155.6	140.2	121.1	112.4	



○ 차량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 산 액	504,258	558,319	601,032	646,534	657,749	619,343
징 수 액	585,935	622,317	519,633	652,285	614,123	
결 산 율	116.2	111.5	86.5	100.9	93.4	



○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규모를 과거 참여정부 부동산 거래 감소 비율을 적용하였다고는 하나, 현 정부의 서울지역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8·27 대책)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 또한, 2019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여 거래 감소가 예상되는바, 매매가격 상승 요인만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 최근 5년간 예산액과 결산액의 과도한 차이를 볼 때, 세입예산에 대한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추계방법과 예·결산액 차이 비교표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 산 액	2,966,662	2,743,833	3,406,022	3,748,089	3,616,039	4,013,624
징 수 액	3,941,660	4,269,792	4,775,578	4,539,452	4,065,536	
결 산 률	132.9	155.6	140.2	121.1	112.4	
초과징수액	974,998	1,525,959	1,369,556	791,363	449,497	

※ 2019년도분 결산전망액: 4,679,659백만원(예상 결산률 109.5%)

- 연도별 추계 산식

연도	추계 산식
2017	'16년 부과전망액 × 유형별점유비 × 거래량증감률 × 과표신장률 × 징수율
2018	'17년 부과전망액 × 거래량증감율 × 징수율
2019	'18년 부과전망액 × 유형별점유비 × 거래량증감율 × 과표신장율 × 징수율
2020	'19년 징수전망액 × 유형별점유비 × 거래량증감율 × 과표신장율

- 연도별 적용 지표 내역

연도	유형별 점유비	거래량 증감률	과표 신장율	징수율	비고
2017	직전년도	'12년 거래증감률*	최근3년 평균	최근3년 평균	*'17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18	-	'01~'02년 평균거래량 대비 '03~'06년 평균 거래량 증감률*	※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로 거래 가격이 불확실하여 과표신장율 미반영 ¹⁾	최근5년 평균	*서울지역 투기지역 지정 전('01년~'02년)과 지정 후('03년~'06년) 기간의 거래량 증감률 적용
2019	최근3년 평균	'04~'08년 평균*	(주택)최근2년평균 (건물)최근3년평균 (토지)최근3년평균	최근5년 평균	*'18년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적용 기간
2020	최근2년 평균	'08~'09년 평균*	최근2년평균	-	*'19년 시장상황과 유사한 기간

1) 2017.8.2. 정부에서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정책 발표

주 민 세

○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 및 법인사업자, 사업장 면적, 종업원급여 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 시세 총 세입액의 3.0%를 차지하는 세목으로 5,944억 6천 5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9.1% 증가)을 편성하였음.

※ “균등분”은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과세대상이 나뉘는 세대상별 2019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장률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517억원으로 추계(전년대비 △1.0% 감소)하고 있고,

※ “재산분”은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입신장율을 적용하여 245억원으로 추계(전년대비 △0.6% 감소)하고 있으며,

※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총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목임으로 취업자수 증감률(99.45%)과 임금상승률(103.38%)을 반영하여 5,183억원으로 추계(전년대비 10.7% 증가)하고 있음.

○ 주민세는 비교적 세입 증감 변동이 적은 세목으로 균등분과 재산분의 경우 최근 세입 신장율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으나, 세대수 및 사업자수가 2019년까지 지속 증가되고 있는바, 전년 대비 감액 편성한 것은 다소 보수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4년간 세대수, 개인 및 법인사업자 현황] (단위 : 세대, 개,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대 수	4,189,839	4,220,082	4,263,868	4,304,243
(증감율)	(100.00)	(100.72)	(101.03)	(100.95)
개인사업자	402,847	455,552	450,407	489,742
(증감율)	(102.13)	(113.08)	(98.87)	(108.7)
법인사업자	258,720	274,208	295,860	360,169
(증감율)	(103.89)	(105.99)	(107.90)	(121.74)

□ 산출 내역(①+②+③) : 594,465 백만원

① 주민세 균등분 : 51,702 백만원

구분	'19년 부과전망액	신장율	징수율	'20년 추계액
개 인	17,758 백만원	101.88%	83.47%	15,101 백만원
개인사업자	22,241 백만원	103.18%	90.87%	20,853 백만원
법인 균등	18,071 백만원	104.30%	83.55%	15,748 백만원

② 주민세 재산분 : 24,465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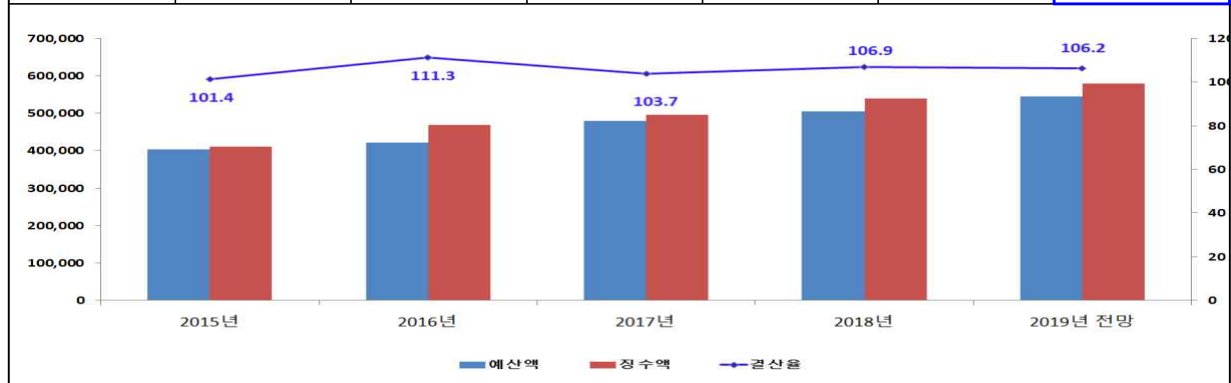
'19년 징수전망액	징수액 신장율	'20년 추계액
23,720 백만원	103.14 %	24,465 백만원

③ 주민세 종업원분 : 518,298 백만원

'19년 징수전망액	취업자수 증감률	임금인상율	'20년 추계액
504,125 백만원	99.45%	103.38%	518,298 백만원

□ 최근 5년 주민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404,019	420,847	478,803	505,197	544,955	594,465
징수액	409,767	468,308	496,310	539,899	578,853	
결산율	101.4	111.3	103.7	106.9	106.2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는 개인의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된 소득에 과세되는 지방세로 2015년 이전까지 국세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2015년 독립세 전환 이후 세입은 신장 추세에 있음.
- 지방소득세는 시세 세입 중 가장 큰 비중(27.8%)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세수추계는 국세 예산안을 반영하여 5조 4,330억 8천만원(전년도 예산대비 3.7% 증액)으로 편성하였음.
 - ※ 종합소득분은 금년 소득을 내년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금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를 고려하여 '19년 예산(7,054억 2천 5백만원)대비 5.7% 증가한 7,452억 7천 1백만원으로,
 - ※ 양도소득분은 2017년부터 지속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로 거래 감소 등 시장 위축에 불구 '19년 예산(4,892억 8천 3백만원) 대비 14.5% 증가한 5,603억 3천만원으로,
 - ※ 법인소득분은 전년도 법인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2019년 반도체 실적 악화 및 수출감소 등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법인 실적 악화로 전년 예산(1조 9,444억 5백만원) 대비 19.5% 감소한 1조 5,653억 8천 7백만원으로,
 - ※ 특별징수분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 및 급여에서 특별징수하는 세목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명목 임금상승, 취업자 수 증가 등이 예상되어 '19년 예산(2조 994억 4천 9백만원) 보다 22% 증가한 2조 5,620억 9천 2백만원을 추계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2020년 소득세 및 법인세 예산안은 전년 예산(160조원) 대비 4.2% 감소한 153조원을 편성하였음에도, 재무국의 지방소득세 예산은 전년 예산(5조 2,386억원) 대비 3.7%(1,945억원) 증액 편성한 것은, 전국 규모의 소득세에 대한 서울시 점유비를 적용하여 산출함으로써, 세입 증가를 예상하여 추계한 것으로 보여짐.

〈2020년 소득세의 지방소득세 서울시 점유비 적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국 세 예 산	17조 4,088억원	16조 7,663억원	64조 4,192억원	54조 2,471억원
점 유 비	42.81 (최근 5년 평균)	33.42 (최근3년 최저)	24.30 (최근2년 평균)	47.23 (최근 5년 평균)

[2020년 정부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0년 예산	2019년	증가 규모	
		본예산	금액	비율
합 계	1,528,414	1,596,179	-67,765	-4.2
총 합 소 득 세	174,088	177,915	-3,827	-2.2
양 도 소 득 세	167,663	141,665	25,998	18.4
법 인 세	644,192	792,501	-148,309	-18.7
원 천 징 수	542,471	484,098	58,373	12.1

○ 다만, 2018년도 결산 관련 국세인 소득세는 113.0%, 지방소득세는 113.3%의 결산율을 보이는 등 매년 국세 및 시세의 예산대비 결산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세 추계에 의존한 추계 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추계모델 개발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8년 정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7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소득세 합계	747,729	844,616	113.0	652,718	768,346	117.7
종합소득세	174,407	182,547	104.7	144,179	167,840	116.4
양도소득세	102,795	180,227	175.3	106,939	151,337	141.5
원천징수분	470,527	500,113	106.3	401,600	449,169	111.8
법인세	630,461	709,374	112.5	539,726	591,766	109.6

[지방소득세 결산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	결산전망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합 계	52,385	54,750	104.5	48,483	54,942	113.3	42,298	46,395	109.7
종합소득분	7,054	7,371	104.5	6,922	7,254	104.8	6,181	6,416	103.8
양도소득분	4,893	4,953	101.2	3,747	7,358	196.4	4,063	5406	133.1
법인소득분	19,444	18,039	92.8	17,222	17,706	102.8	15,417	14,747	95.7
특별징수분	20,994	24,387	116.2	20,592	22,624	109.9	16,637	19,826	119.2

산출 내역 : 5,433,080 백만원

○ 2020년 국세예산안 서울시 점유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국 세 예 산	17,408,800	16,766,300	64,419,200	54,247,130
점 유 비	42.81	33.42	24.30	47.23

○ 유형별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국세예산	지방세 비율	서울시 점유비	2020년 추계액
합 계	152,841,430	-	-	5,433,080
종합소득분	17,408,800	10%	42.81%	745,271
양도소득분	16,766,300	10%	33.42%	560,330
법인소득분	64,419,200	10%	24.30%	1,565,387
특별징수분	54,247,130	10%	47.23%	2,562,092

최근 5년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 망	'20년 추 계
예 산 액	3,747,613	4,131,153	4,229,767	4,848,309	5,238,562	5,433,080
징 수 액	4,230,996	4,189,316	4,639,565	5,494,275	5,474,980	
결 산 율	112.9	101.4	109.7	113.2	104.5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소비지출분(15%)과 취득세 보전분(6%)으로 구분되며, 부가가치세의 21%를 지역별 안분 비율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되는 세목으로,

- 재무국은 2020년 정부 부가가치세 예산안에 지방소비세 세율 및 서울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전년 최종예산*(1조 7,947억 7천 3백만원) 대비 13.7% (2,468억원) 증가한 2조 414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1조 3,591억 9천 9백만원(당초예산) + 4,354억 7천 4백만원(2019년 귀속 지방소비세율 4% 인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 2020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방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전환사업비를 지방소비세로 보전함에 따라, 2020년 소비지출분 세율을 종전 9%에서 15%로 인상(6%)하는 반면, 소비지출분 10% 중 4.5조원을 지역별 전환사업비등 보전재원을 차감하여 지역별 보전비율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각 자치단체에 교부할 예정임.

※ 지방소득세(소비지출분) 세율: '18년 11%에서 '19년 15%로 '20년은 21%까지 인상 [2020년 기준 지방소비세 안분 방식]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					
(국세) 부가가치세 79%				(지방세) 지방소비세 21%	
구분	안분방식				
6%p	취득세 감소분	지방교육세 감소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취득세 감소비율(98%) + 사회복지수요(2%)	취득세 감소비율	보통교부세 배분비율(19.24%) 시·도 몫 시·군·구 몫		
5%p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시·도] 지방소비세				
10%p	① 전환사업 보전분(3.6조/정액)		② 재정조정분(0.9조/정액)		③ 잔여분
	시·도 (약2.8조)	시·군·구 (약0.8조)	조정교부금 (약0.8조)	교육전출금 (약0.1조)	시·도 소비지출 x 가중치(1:2:3)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합 계		1,399,063	1,794,673	2,041,427
소 비 지출분	소 계	571,472	993,382	1,198,662
	당초(5%)	571,472	557,908	594,877
	인상(4%,6%)	-	435,474*	603,785**
취득세감면보전분(6%)		827,591	801,291	842,765

* 2019년 지방소비세 4%P 인상에 따라 금년 추경에 반영된 지방소비세액

** 2020년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으로 2019년 인상 4%P를 포함한 10% 인상된 지방소비세

○ 다만, 명목상 2020년 세율 인상이 6%인바, 2019년도분 4% 인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액(4,357억원)과 비교해 보면, 2020년 6%의 세율 인상에 따라 6,536억원 수준의 증액편성이 되어야 하나, 정부 정책에 따른 최종 세입 증가액이 2,468억원에 그치고 있고, 2022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바,

○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을 주창해온 정부가, 이와 연계한 정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소요액을 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지방분권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자치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소한 2022년 이후까지 현 정부정책이 연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정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8년			2017년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부가가치세	615,353	670,870	109.0	615,353	670,870	109.0

[지방소비세 결산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예산	결산전망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예산	결산	결산율
지방소비세	17,947	18,953	105.6	12,127	13,991	115.37	10,559	13,053	123.6

<지방소비세 개요 (20년 추계 기준)>

-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
- 납입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납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납부('19년 납입관리자 : 울산광역시장)

① 소비지출 비율(15%) 분

- '10.1.1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목으로 부가가치세(국세)의 9% 적용 [5%('18년)→9%('19년)→15%('20년 개정 예정)]
- '19년 서울시 안분비율 : 13.646%
- 안분방법
 - 1) 전국지방소비세(5%) × 지역별 안분비율
 - 2) 전국지방소비세(10%) 중 4.5조원: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비율에 따라 지급
 - 3) 전국지방소비세(10%) 중 4.5조원 차감 후 잔액 × 지역별 안분비율

② 취득세 감면 보전(6%) 분

- '13.12.26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영구인하로 감면된 취득세 보전 성격
- '19년 서울시 안분비율 : 26.633%
- 안분방법 : 전국지방소비세(6%)-[지방교부세(19.24%)+지방교육청 교부금(20.27%)] × 서울시 안분비율 = 지방소비세 세입

산출 내역 : 2,041,427 백만원

① 지방소비세가 포함된 정부의 부가가치세 예산으로 환산

(단위 : 백만원)

'20년 부가세 예산	÷	지방소비세 비율	=	'20년 부가세 예산
68,877,700		79%		87,186,962

② **균특회계 보전분 및 자치구, 교육청 보전액(정액) : 4.5조원**

- 균특회계 보전액 3.6조원, 자치구 0.8조원, 교육청 0.1조원 보전

③ **지방소비세 소비지출분 추계액 : 1,198,662 백만원**

- 5%분

(단위 : 백만원)

'20년 부가세 예산	x	서울	x	서울시 안분율	=	소비지출분(5%) 추계액
87,186,962		5%		13.646%		594,877

- 10%분

(단위 : 백만원)

'20년 부가세 예산	x	서울	-	자치구,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	균특회계 기능이양 보전	x	서울시 안분율	+	균특회계 보전분(정액)	=	소비지출분(10%) 추계액
87,186,962		10%		0.9조원		3.6조원		13.646%		28,102		603,785

※ 정부 재정분권에 따른 서울 인상 효과 구분을 위해 5%분와 10%분으로 나누어 추계

- 균특회계 보전에 따른 서울시 안분액: 28,102백만원

※ 교육청 전출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대상 제외

④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추계액 : 842,765 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년 부가세 예산	x	서울	-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액	-	교육청 전출금 보전액	x	서울시 안분율	=	취득세보전분(6%) 추계액
87,186,962		6%		1,006,486		1,060,368		26.633%		842,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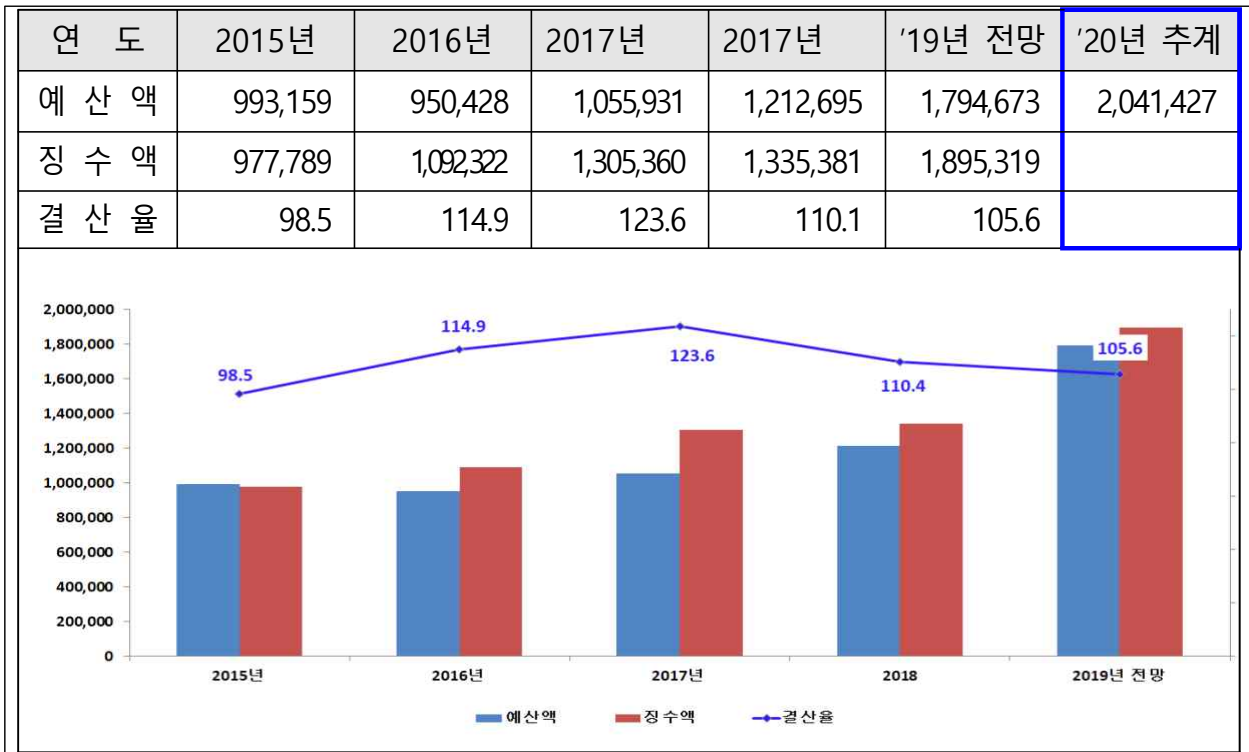
▶ 지방교부세 감소분: 87,186,962 x 6% x 19.24% = 1,006,48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 87,186,962 x 6% x 20.27% = 1,060,368

⑤ **지방소비세 추계액(③+④) : 2,041,427 백만원**

최근 5년 지방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분하며, ‘소유분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의 세목이고, ‘주행분 자동차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는 세목으로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0년 자동차세 세입은 전년대비 2.4%(271억 1천 7백만원) 감액된 1조 1,049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소유분 자동차세는 최근 5년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세 및 내년 경기 개선 전망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 증가 예상으로 세입증가를 예상하여, 2019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신장율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 최근 5년 자동차세 징수액 및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년전망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자동차세	징수액	612,421	593,961	592,390	575,204	555,510	539,578
	증감률	103.11	100.27	102.99	103.55	102.95	101.73

◇ 최근 5년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단위 : 대, %)

구 분	'19년6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등록대수	3,120,332	3,124,651	3,116,256	3,071,731	3,045,442	3,002,363
증 감 률	99.86	100.27	101.44	100.86	101.43	101.33

※ 주행분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유가보조금 보전분으로 구분하여 자동차세 보전분은 전국 자동차세 보전액(9,830억원)을 기준으로 우리시 2019년 하반기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 자동차세 보전분 안분비율 현황 (단위 : %)

구 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안 분 율	15.82	15.39	16.19	15.82	16.64	16.19	16.99	16.64	17.24	16.99	17.58	17.24

※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경우 2020년도 택시·화물·버스 유가보조금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18년 과다교부액 미정산액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음.

○ 감액 편성 사유는, 주행분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2018년 귀속 유가보조금 보전분의 과다 교부에 따라 과다교부액 717억 8천 8백만원을 2019년 4월부터 월별 교부액에서 정산 중이며, 2020년 정산 대상 217억 6천 8백만원의 세입감소에 따른 것으로, 유가보조금 보전분 조정에 있어서 착오는 없는지,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19년 유가보조금 보전분 과다교부액 정산 내역〉

구분	금액
'19년 4월 미정산잔액(a)	71,788 백만원
'19년 4~7월 간 안분액(b)	21,971 백만원
'19년 7월말 현재 미정산액(c=a-b)	49,817 백만원
'19년 8~12월 안분 예정액(d)*	28,049 백만원
'19년말 미정산 잔액(c-d)**	21,768 백만원

* '19년 안분을 적용 2~7월 간 유가보조금 보전분 평균액 x 5월

** '20년도로 이월하여 정산 진행

산출 내역

① 소유분 자동차세 산출 내역: 632,191 백만원

'19년 부과전망액	×	세액신장율	×	징수율	=	2020년 추계액
691,376 백만원		102.27%		89.41%		632,191 백만원

② 주행분 자동차세 : 472,784 백만원

- 자동차세 보전분 : 151,318 백만원

자동차세 보전분 총액	×	서울시 안분율	=	2020년 추계액
9,830억원		15.3935%		151,318 백만원

- 유가보조금 보전분 : 321,466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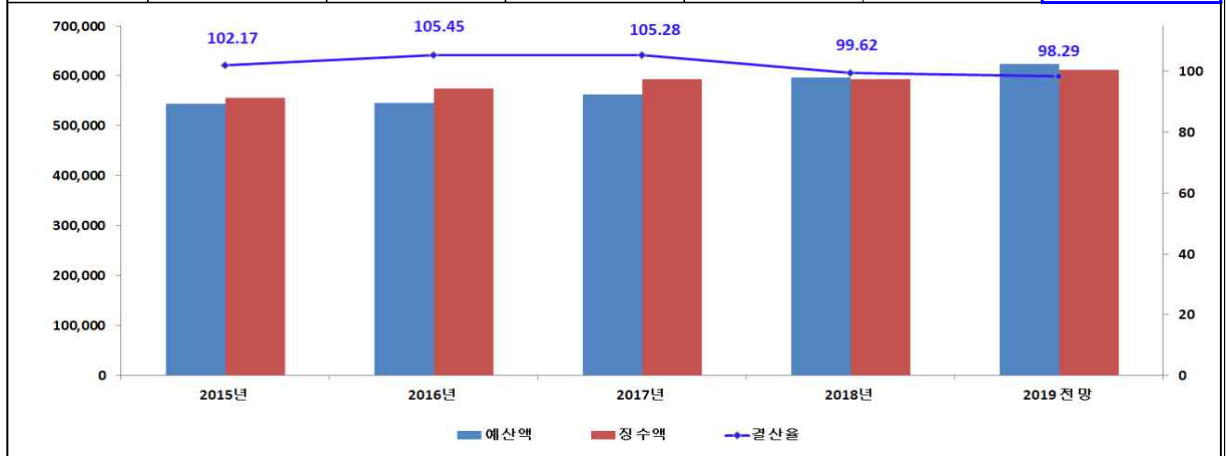
'20 유가보조금 세출 예산액	×	교통환경세 신장율	-	'20년 미정산 이월액	=	2020년 추계액
333,114 백만원		103.038%		21,768백만원		321,466백만 원

□ 최근 5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 현황

○ 소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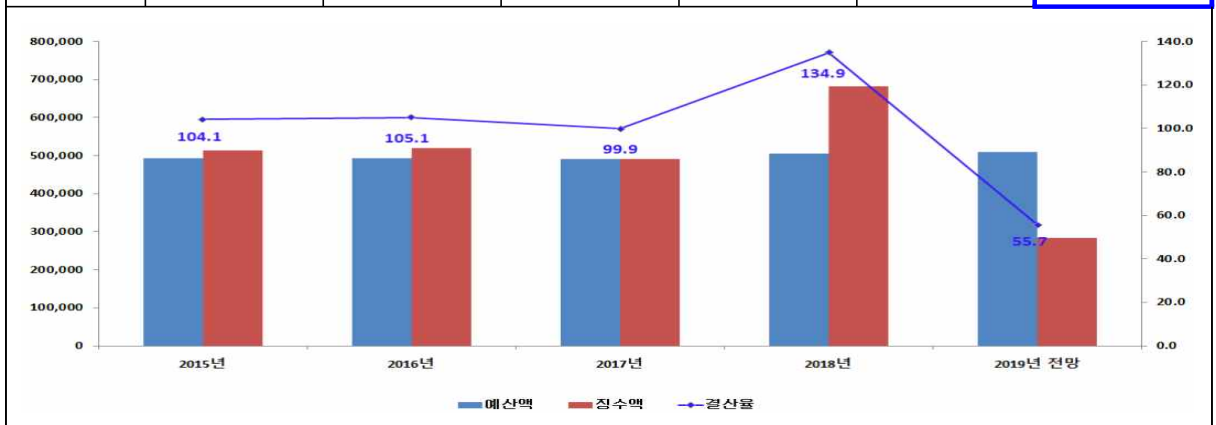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543,727	545,488	562,675	596,200	623,104	632,191
징수액	555,510	575,204	592,390	593,961	612,421	
결산율	102.17	105.45	105.28	99.62	98.29	



○ 주행 분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492,530	493,846	491,865	505,438	508,988	472,784
징수액	512,723	518,939	491,393	681,584	283,421	
결산율	104.1	105.08	99.9	1*34.9	55.7	



■ 레저세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의 입장객을 대상으로 투표권 발매금액의 10%를 징수하는 세목으로, 1,248억 7천 3백만원(전년 예산대비 4.7% 감소)으로 편성하였음.

- 2020년은 장외발매소 감소 영향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로 구분한 후 직전년도('18년) 유형별 세액신장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음.

◇ 연도별 레저세 징수 추이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년추계
예 산 액	129,457	126,768	132,083	131,021	124,873 (△4.7%)
결산(징수)액	138,958	140,861	135,150	79,181 (69.1%)	-

□ 산출 내역 : 124,873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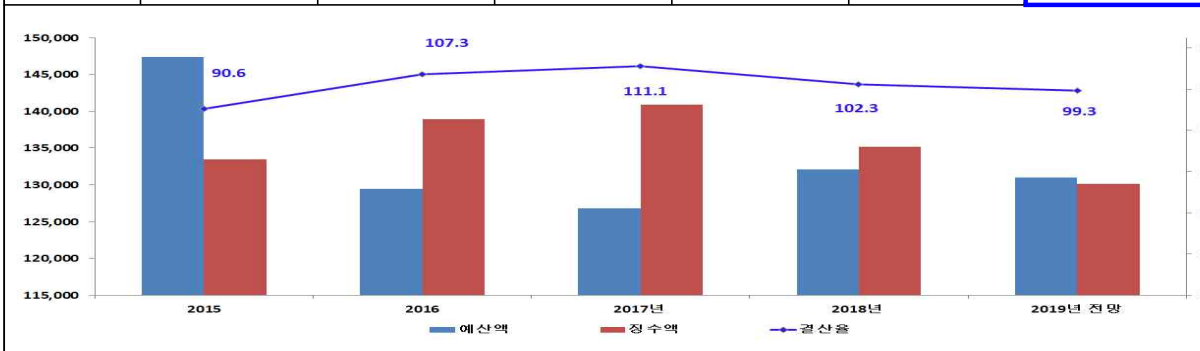
구 분	'19년 징수전망액	세입신장률	'20년 추계액
경 마	88,084 백만원	94.48%	83,221 백만원
경 륜	32,013 백만원	99.26%	31,776 백만원
경 정	10,067 백만원	98.11%	9,876 백만원

X =

□ 최근 5년 레저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147,366	129,457	126,768	132,083	131,021	124,873
징수액	133,449	138,958	140,861	135,150	130,164	
결산율	90.6	107.3	111.1	102.3	99.3	



※ 2019년도분 결산전망액: 130,164백만원(결산예상률 99.3%)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는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궐련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5,643억 4천 9백만원(전년도 예산대비 8억 2천 6백만원, 0.1% 감소)으로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정부의 금연 정책 효과로 담배판매량도 지속 하락 추세에 있음.

◇ 흡연율 및 담배판매량 현황 (단위 : %, 천갑)

구 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흡연율 ¹⁾	19.80	20.00	20.50	22.60	24.20	24.10
(증감율)	(-0.20)	(-0.50)	(-2.10)	(-1.60)	(0.10)	(-1.70)
담배판매량 ²⁾	603,684	630,324	656,596	538,546	846,044	818,231
(증감률)	95.77	96.00	121.92	63.65	103.4	96.57

1) 출처: 보건복지데이터포털

2) 담배소비세 징수액 ÷ 갑당 담배소비세액으로 추정하여 계산된 값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 추이〉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망	'20년추계
예 산 액	499,676	634,255	624,383	565,175	564,349 (△0.1%)
결산(징수)액	661,192	634,736	607,910	419,350 (74%)	-

※ 2019년도분 결산전망액: 573,871백만원(결산예상률 101.5%)

- 2020년도 담배소비세 세입 예산액은 궐련형 전자담배 증가와 흡연률 감소로 전년대비 0.1%(8억원) 감액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담배소비세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세부담에 있어서, 세율을 현행 궐련담배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은 없는지 정부의 금연 정책 및 세율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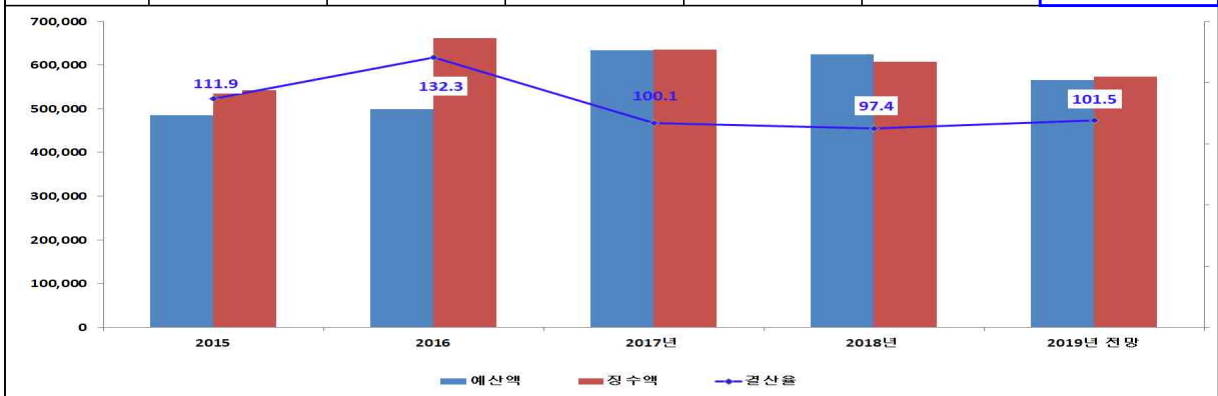
※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641원→1,007원) 이후, 세입 증가추세를 유지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담배소비세가 낮은(896원/갑) 전자담배 판매량 증가, 담배갑 흡연 경고 그림 삽입 등 정부 금연정책에 따라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무국은 최근 6년중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특수요인('15년, '16년)을 제외한 최근 4년 평균 담배 판매량 증가율과 흡연증감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음.

산출 내역 : 564,349 백만원

2019년 전 망 액 573,871	X	담배판매량 증 감 률 98.39%	X	흡연증감률 99.95%	=	2020년 추 계 액 564,349
---------------------------	---	--------------------------	---	-----------------	---	---------------------------

최근 5년 담배소비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 산 액	484,436	499,676	634,255	624,383	565,175	564,349
징 수 액	542,316	661,192	634,736	607,910	573,871	
결 산 율	111.9	132.3	100.1	97.4	101.5	



■ 재산세

○ 재산세는 특별시분 재산세와 도시지역분으로 구분되고, 특별시분 재산세는 2007년 7월 신설되어 자치구 자원불균형 해소를 위해 구세인 재산세의 일정비율을 공동세로 징수하여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세목이며,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총 2조 9,989억 9천 9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4.7%, 3,838억 8천 3백만원 증가)을 편성하고 있음.

- ※ “특별시분 재산세”는 2020년도 25개 자치구 재산세 추계액(선박 및 항공기 제외)을 합산하여 2020년 특별시분 재산세 세입 비율(50%)을 적용하여 1조 4,146억 2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6.7% 증가)을 계상하고 있으며,
- ※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 바, 과세대상별 과표증감률 등을 감안하여 1조 5,843억 7천 4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12.9% 증가)을 계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주택	평균	13.99	8.76	6.65	5.35	3.35
	단독	13.95	7.32	5.18	4.51	2.40
	공동	14.02	10.19	8.12	6.20	4.30
건 물	2.90	2.99	1.52	1.54	1.56	3.23
토 지	12.07	6.84	5.26	4.08	4.47	3.35

-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보유세인 재산세 인상 요인이 크고, 연도별 세입 결산액도 최근5년간 5.0% 이상 예산액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음.
- 또한, 당초 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 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는바, 재산세는 보유세로써 경제여건 등 환경영향이 적고, 시가표준액 등 과세표준 또한 예측이 가능하며, 체납에 따른 채권확보 또한 용이한 세목으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가능한 세목이라 할 것인바, 정밀한 세수추계를 위한 자치구 교육 등과 함께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정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15~'19년) 평균 재산세 세입예산 증가율: 7.6%

산출 내역(①+②) : **2,998,999** 백만원

① 특별시분 재산세 추계액 : 1,414,625백만원

'20년 자치구 추계액	X	적용율	=	'20년 추계액
2,829,241 백만원		50%		1,414,625 백만원

② 도시지역분 재산세 추계액 : 1,584,37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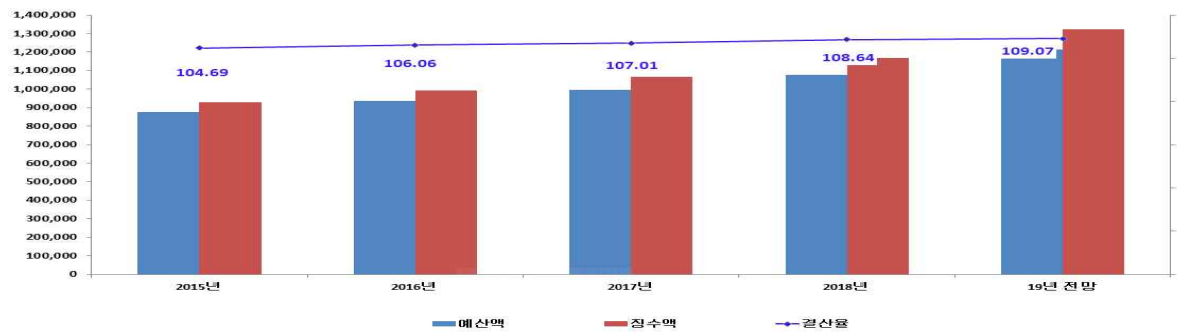
구분	'19년 부과 전망액	공시가격 상승률	징수율	'20년 추계액
주택	837,792	108.21%	98.23%	890,529
건물	118,299	103.86%	98.23%	120,690
토지	553,327	105.45%	98.23%	573,155

최근 5년 재산세 예산 및 결산 현황

○ 특별시분 재산세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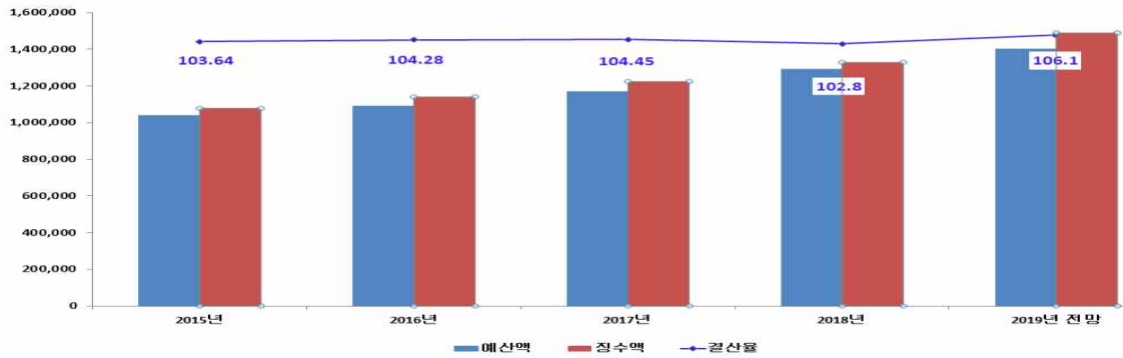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875,250	934,700	994,735	1,076,672	1,212,025	1,414,625
징수액	927,503	991,387	1,064,505	1,169,661	1,321,930	
결산율	104.69	106.06	107.01	108.64	109.07	



○ 도시지역분 재산세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1,039,661	1,093,174	1,171,663	1,292,759	1,403,091	1,584,374
징수액	1,077,532	1,139,913	1,223,779	1,328,324	1,488,587	
결산율	103.64	104.28	104.45	102.8	106.1	



◇ 2020년 공동재산세 각 구별 추계액 : 1,414,621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자구 재산세 추계				특별시분 재산세
	주택	건물	토지	계	
계	1,287,759,135	212,328,858	1,329,153,470	2,829,241,463	1,414,620,736
종로구	19,296,996	10,107,330	72,416,226	101,820,552	50,910,276
중구	12,915,824	14,358,982	106,092,373	133,367,179	66,683,590
용산구	67,517,955	6,393,696	61,304,489	135,216,140	67,608,070
성동구	45,213,000	6,023,000	31,110,000	82,346,000	41,173,000
광진구	30,795,549	4,594,410	24,117,824	59,507,783	29,753,892
동대문구	23,971,047	5,156,512	24,811,717	53,939,276	26,969,638
중랑구	16,766,324	3,166,039	16,168,249	36,100,612	18,050,306
성북구	33,750,773	3,617,375	19,613,154	56,981,302	28,490,651
강북구	12,901,414	2,692,143	13,407,138	29,000,695	14,500,348
도봉구	16,370,480	2,287,595	10,353,354	29,011,429	14,505,715
노원구	29,311,110	3,288,069	18,815,497	51,414,676	25,707,338
은평구	27,024,138	4,089,939	20,380,034	51,494,111	25,747,056
서대문구	26,821,677	3,870,130	20,208,105	50,899,912	25,449,956
마포구	47,284,145	11,605,869	58,371,840	117,261,854	58,630,927
양천구	57,297,897	5,089,624	19,316,633	81,704,154	40,852,077
강서구	39,996,887	13,117,519	46,888,980	100,003,386	50,001,693
구로구	23,749,754	8,025,963	24,637,461	56,413,178	28,206,589

구분	2020년 자구 재산세 추계				특별시분 재산세
	주 택	건 물	토 지	계	
금 천 구	10,587,600	9,310,583	20,757,967	40,656,150	20,328,075
영등포구	48,225,000	14,979,000	70,215,000	133,419,000	66,709,500
동 작 구	39,448,797	3,626,380	20,941,912	64,017,089	32,008,545
관 악 구	23,254,159	5,695,757	26,147,902	55,097,818	27,548,909
서 초 구	173,693,289	16,673,298	137,938,834	328,305,421	164,152,711
강 남 구	270,694,699	32,710,825	323,839,835	627,245,359	313,622,680
송 파 구	144,786,135	16,236,740	103,189,585	264,212,460	132,106,230
강 동 구	46,084,486	5,612,080	38,109,361	89,805,927	44,902,964

목 적 세

-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7.7% (1,308억 5천 1백만원) 증가된 1조 8,352억 1천 2백만원의 세입을 편성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의 9.3%(전년도 9.6%)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연자원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 및 대형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구분되며, 총 3,009억 2천 5백만원(전년 예산 대비 5.6%, 160억 5천 7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 “특정자원분”은 지하수와 화력발전이 과세대상으로, 지하수는 기타용수에 해당하는 지하수에 과세되며 상하수도의 사용 증가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화력발전은 도심지에 위치(마포, 송파)하고 있으나 가동율은 낮아 3억 4천 5백만원을 추계·편성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세율 요약

- 과세대상 :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지하수 세율 : 음용수(1㎡ 당 200원), 온천수(1㎡ 당 100원), 기타(1㎡ 당 2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kWh 당 0.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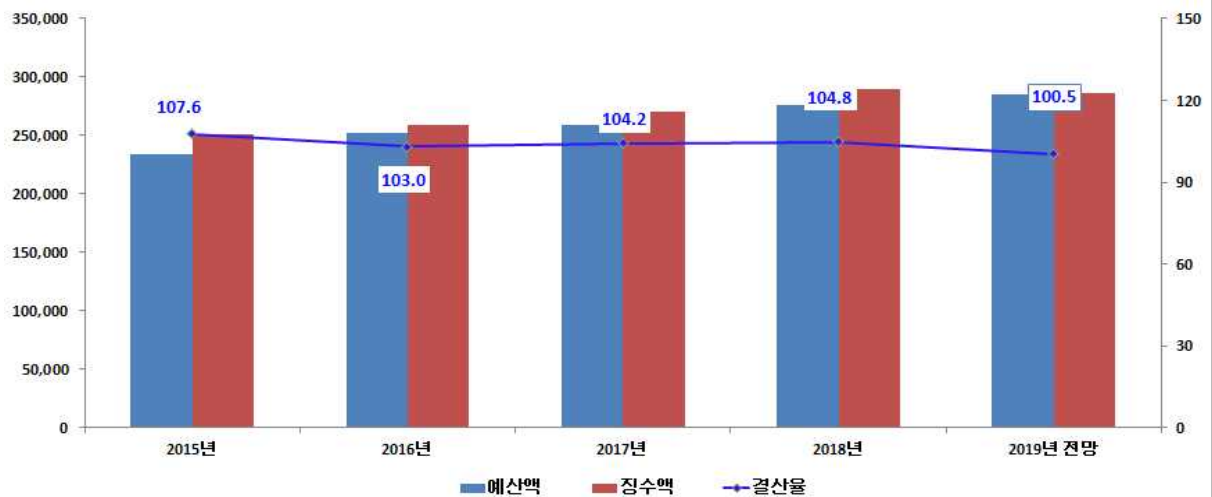
※ “특정부동산분”은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의 공시가격이 매년 상승 추세에 따라 세입은 증가하여 총 3,005억 8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2019년 부과 전망액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등 유형별 점유비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징수율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주택	평균	13.99	8.76	6.65	5.35	3.35	1.60
	단독	13.95	7.32	5.18	4.51	2.40	4.09
	공동	14.02	10.19	8.12	6.20	4.30	-0.90
건물		2.90	2.99	1.52	1.54	1.56	3.23

□ 최근 5년간 결산현황 및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233,714	252,023	258,985	275,965	284,868	300,925
징수액	251,361	259,467	269,844	289,133	286,307	
결산율	107.6	103.0	104.2	104.8	1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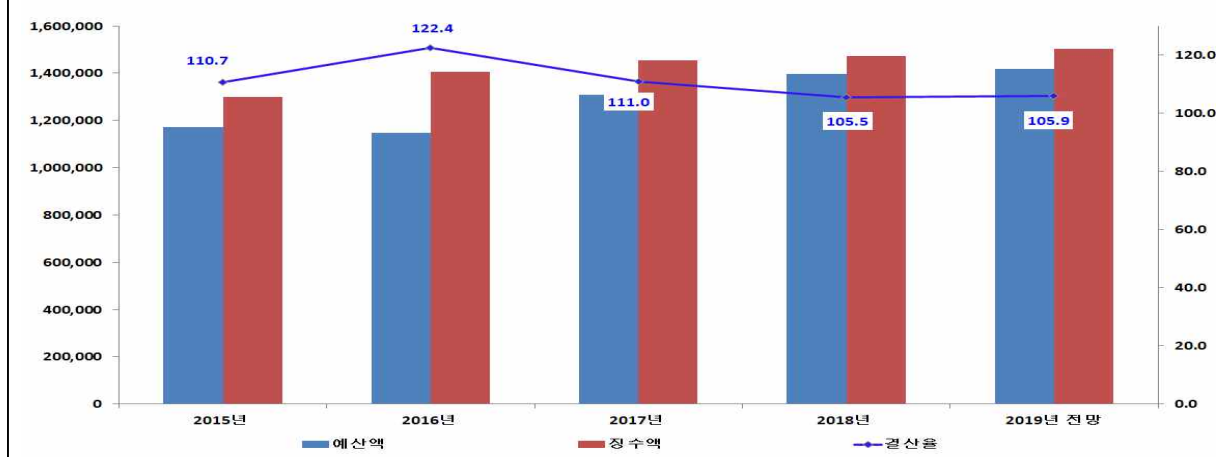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부동산취득세(20%), 재산세(20%), 담배소비세(43.99%), 레저세(40%), 균등분주민세(25%), 승용자동차세(30%), 등록분 면허세(20%) 등의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며, 2020년 예산은 1조 5,342억 8천 7백만원(전년 예산대비 8.1%, 1,147억 9천 4백만원 증액)으로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육세는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목적세로서, 교육청의 적정 세출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재무국의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5년 지방교육세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1,172,546	1,147,581	1,309,577	1,395,553	1,419,493	1,534,287
징수액	1,298,199	1,404,846	1,453,765	1,472,237	1,502,648	
결산율	110.7	122.4	111.0	105.5	105.9	



지난년도 시세

○ 지난년도 시세는 해당연도 출납정리기간 내에 납입되지 못한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0.2%(511백만원) 증액한 2,220억 7천 8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지난년도 시세 예산편성 및 징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 재무국의 지난년도 시세 예산(징수목표)액 대비 결산(수납)률은 85%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징수결정액(총체납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매년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난년도 시세 징수결정액/예산액/결산액/편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징수결정액(A)	1,276,535	1,416,742	1,328,201	1,256,009	994,381
예산(징수목표)액(B)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예산편성률(B/A)	14.3	15.9	17.6	18.8	22.3
결산(수납)액(C)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률(C/B)	98.5	105.4	89.8	85.7	(100.4)
징수율(C/A)	14.1	16.8	15.8	16.1	(22.4)
결손액(D)	103,468	234,810	257,982	383,784	-
결손률(D/A)	8.1	16.6	19.4	30.6	-

○ 이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징수결정(총체납액)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의 20% 내외로 자의적으로 세입예산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외관상 결산실적을 과대포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예산액 편성 규모에 대한 기준 마련 등 객관적 목표 설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19년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징수목표액)은 22.3%로 상향 편성것으로 보이나, 이는 2018년도에 전례없는 30.6%(3,838억원)의 결손처분으로 모수인 징수결정액이 줄어든데 원인이 있는 것이며, 실제 예산액(징수목표액)은 2016년 이후 최저치임.

○ 또한 2019년 징수목표액은 2018년 대비 6.4%(150억원) 하향 편성하고, 2020년에는 전년대비 0.2%(5억 1천만원) 상향에 그치고 있는 등, 체납징수 활동이 극히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인 분위기 쇄신과 함께 근본적인 징수실적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난년도 시세 예산편성 및 징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예산 증감률	-	23.4	3.6	1.4	-6.4	0.2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 산출 내역: 222,078 백만원

산 출 서 식
('19년 세목별 총체납 예상액 × 세목별 징수율) + 특수요인 = '20년 추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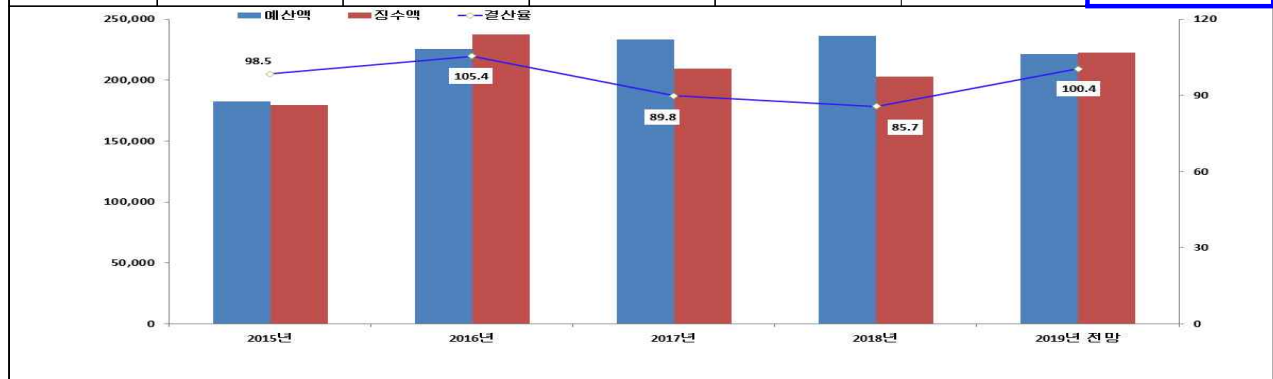
〈세목별 '20년 추계액 산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년 예상 체납현황		'20년 기준체납액 (C=A+B)	'20년 추계현황			추계액 (E+F)
	지난년도 체납(A)	신규발생 체납(B)		징수율 (D)	징수예상액 (E=C×D)	특수요인 (F)	
합 계	542,669	306,993	849,662	-	166,168	55,910	222,078
취 득 세	38,655	9,334	47,989	14.96	7,179	2,098	9,277
주 민 세	7,210	6,339	13,549	35.43	4,800	1,195	5,995
지방소득세	394,108	130,041	524,149	7.04	36,900	1,465	38,365
자 동 차 세	43,060	76,405	119,465	54.91	65,598	32,939	98,537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특별시분 재산세	19,396	20,768	40,164	24.96	10,025	4,568	14,593
도시지역분 재산세	16,985	19,873	36,858	36.70	13,527	4,569	18,096
지역자원 시설세	3,832	3,050	6,882	35.75	2,460	680	3,140
지방교육세	19,423	41,183	60,606	42.37	25,679	8,396	34,075

▶ 징수율: 최근 2년 평균

□ 최근 5년 지난년도 수입 예산 및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 전망	'20년 추계
예 산 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222,078
징 수 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 산 율	98.5	105.4	89.8	85.7	100.4	



세외수입

○ 2020년 재무국 세외수입세입은 재무국 일반회계 세입의 1.2% (전년도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도 최종예산 6,407억 1백만원 대비 64.3%(4,120억 4천 4백만원) 감액한 2,286억 5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주된 감액 원인은 재산매각수입(서울의료원) 매각수입금(2019년 최종 4천 6억 9천 1백만원) 미편성.

■ 공유재산임대료

○ ‘공유재산임대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로,

- 최근 3년 평균 징수액(2,488백만원)에 2019년 지가 상승률 (12.35%)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1%(18억 4천 1백만원) 증액한 140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 행정재산 : 공용재산(청사사무실 등), 공공용재산(공원, 도로),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1-02 공유재산임대료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이용료·실습수입·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			

○ 공유재산 임대료는 사유재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유재산 무단 점유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임대료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위원회 지적과 같이 공유재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치구 위임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에 대한 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2018.9.) 참조

※ 임대수익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50%, 시 5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5%, 시 85%

◇ 연도별 공유재산임대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9월)	결산전망	
14,721,457	15,508,216	10,849,298	11,182,769	11,224,899	11,782,706	12,187,236	584,150	12,485,815	14,027,853

■ 기타사용료

○ ‘기타사용료’ 수입은 청사·공원·체육시설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과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시유재산 사용료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1,042백만원)에 2019년 지가상승율(112.35%)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2억 9백만원) 증액한 23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1 재산임대수입			
		212-08 기타 사용료		1.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 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수입 2. 기타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사용, 주차장사용 등 사용료 수입 3.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

◇ 연도별 기타사용료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9월)	결산전망	
1,049,123	975,968	1,056,956	1,809,273	1,102,287	1,961,260	2,091,754	2,028,358	2,048,149	2,301,096
결산률: 93.0%		171.2%		177.9%					

○ 예산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7년 171.2%(7억5천2백만원 초과징수), 2018년 177.9%(8억 5천 9백만원 초과징수)의 결산률을 보이고 있어, 매번 과소 추계로 인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면밀한 세입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 각종 수입금을 금고·은행에 예치함에 따른 과실 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2019년도 예산대비 8.1%(35억 1천 5백만원) 감액한 398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연도별 이자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일반회계 여유자금 운용이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8,227,000	41,157,106	20,915,836	49,798,492	39,266,904	55,561,525	39,200,441	15,229,996	41,797,600	35,404,000

- 기타이자 수입(세입세출외현금 운용이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580,344	1,076,453	1,358,288	1,406,054	1,184,000	1,143,868	1,027,085	500,707	1,239,595	1,229,180

- 기타이자 수입(징수관 계좌 관련 이자수입)

2016		2017		2018		2019			2020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9월)	결산전망	
2,247,497	3,897,481	2,726,379	4,183,001	3,621,595	3,701,455	3,148,522	1,451,283	1,574,261	3,226,765

- 기타이자 수입(체납자 분납통장 발생이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1,000	3,347	1,224	904	2,154	21,380	3,267	1,623	4,212	4,24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 세외수입	
			216 이자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 공공예금이자수입
			216-06 기타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시금고 예적금 약정 금리: 정기예금 COFIX금리(기준)+가산금리, 공공예금 1.52%(고정)

※ '19년부터 적용되는 신규약정 금리 산정 기준(1.85%→1.52%)에 따라 이자액 조정

※ 기준금리(COFIX) : 2010년 2월 16일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금리를 취합한 뒤, 은행별 조달잔액을 참작해 가중 평균 금리를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

- 한편, 2019년 공공예금 이자수입 전망자료를 보면, 시금고 평균잔액 전망치(2조 4,120억원)의 90%를 변동금리 단기 정기예금(1~6개월)에 예치하고 있는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됨.

< 2019년 평균잔액(전망치) 및 운영현황 >

(단위: 백만원)

기 간		평균잔액 규모(전망치)		점유비(%)
계		2,412,003		100
정기 예금	12개월	2,170,803	-	-
	6개월		48,240	2
	3개월		72,360	3
	1개월		2,050,203	85
공급예금		241,200		10

※ '19. 6월 기준 예금금리 : 공급예금(1.52%), 정기예금(1개월 1.74%, 3개월 1.93%, 6개월 2.20%, 1년 2.40%)

※ 시금고 예·적금 약정 금리: 정기예금 COFIX금리(기준)+가산금리, 공급예금 1.52%(고정)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는 유휴자금 운영에 대하여 금고 등의 협조를 받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요구불예금 최소화, 고율이자 예치 등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에 재무국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공유재산매각수입(시유재산 매각 수입금)

○ 재무국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 일반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일반징수분(387억 6천 5백만원)은 최근 3년간('16년~'18년) 평균 징수액에 2019년 지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특별징수분인 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반납대금(144억 4백만원)을 포함하여 전년 최종 예산 대비 87.7%(4150억 2천 9백만원) 감액한 579억 5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수입금의 귀속

- 자치구 위임 : 구 20~30%, 시 70~80%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 : 서울주택도시공사 1.85%, 시 98.15%

2020년 공유재산매각수입 산출내역

- 2020년 추계액 : 57,956,955천원
- 산출내역
 - 일반징수 : 43,552,475천원
 - 38,764,998천원('16년도~'18도 징수평균액)×112.35%('19년도 지가상승률)
 - 특별징수 : 14,404,480천원(원지동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분납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1			재산매각수입
		221-03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 2. 공유재산과 타인재산의 교환차액수입

- 한편, 재무국은 본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하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 세입예산(5,873억원) 대비 15.1%(1,142억원) 감액한 4,730억원으로 감액 편성한바 있음.
- 이는 사유지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부지(강남구 삼성동 171, 171-1, 31,543㎡) 중 일부(7,000㎡, 22.2%)를 공공주택 건설 부지로 변경·활용하고, 잔여부지(24,543.9㎡, 77.8%)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변경함에 따른 것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세입 추가경정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2019년도			증감률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 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14,961	400,691	△114,270	△22.2

※ 기정예산은 최종(2016년 11월) 감정평가액: 936,292백만원의 55%

○ 그러나, 감액편성 후에도 매각계약체결 실패로, 결국 6년째 매각이 불발로 그쳐 매년 막대한 세입결손을 초래하여, 서울시 전체 재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을 매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음.

◇ 연도별 공유재산매각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최종)	징수액 (9월)	결산 전망	
610,478,361	33,275,516	511,875,190	49,931,454	514,960,932	109,977,946	472,985,620	12,736,505	38,764,998	57,956,955
결산률	(5.5%)		(9.8%)		(21.4%)		(2.7%)	(8.2%)	

○ 나아가, 매각부지 축소로 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득(2016.6.28.)하였음에도, 서울의료원 매각 부지에 대한 2020년 공유재산매각수입과 감정평가수수료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바,

○ 이는 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매각 계획이 취소 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소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한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예산 사전절차 위반과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조장하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재무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 입 (매각수입)	예 산	300,000	473,462	534,875	437,600	514,961	472,986
	결 산	-	-	-	-	-	-
세 출 (감정평가 수수료)	예 산	-	623	663	-	615	615
	결 산	-	663	615	-	-	-

■ 그외수입 (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 재무국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을 계상하는 세입항목으로, 전년 대비 0.6%(6억 4천만원) 감액한 1,066억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기타수입	
			224-06 그외수입	1. 기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2.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수입 3.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 4.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지원금

◇ 연도별 그외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최종)	징수액 (9월)	결산 전망	
43,724,733 (결산률)	54,480,651 (124.6%)	33,681,640	35,989,026 (106.9%)	33,820,969	39,888,116 (117.9%)	106,795,580	105,255,614 (98.6%)	107,094,627 (100.3%)	106,034,875

- 주요 세입 내역은 시금고 출연금(1,028억원),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12억 5천 3백만원), 자치구 시세 환급금 소멸시효 완성분 등 시세 관련 자치구 그외수입(12억 5천 6백만원)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
- 이 중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은 시유재산 임대 등 과세대상 매출세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발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아 처리하는 세입으로,

◇ 연도별 그외수입 중 부가가치세 공제매입세액 세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 전망	
1,223,571	11,955,096	1,176,112	4,016,338	1,231,947	7,521,111	1,245,649	0	1,245,649	1,253,221
(결산률)	(977.1%)		(341.5%)		(610.5%)			(100.0%)	

- 예산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6년 977.1%(107억 3천 2백만원 초과), 2017년 341.5%(28억 4천만원 초과), 2018년 610.5%(62억 8천 9백만원 초과)로 예산대비 과도하게 초과징수 하는 등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2010년 이후 담당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1,789건에 4억 4천 6백 만원의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환급분에서 대체하고 있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가산세를 시민의 세입재원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가산세 발생 문제에 대한 산하기관, 위탁기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재무국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망된 다고 하겠음.

◇ 연도별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해당 분기	건수	세액	가산세	납부일	납부사유	소관부서
합계		1,789	1,196,931	446,007			
2010	2009.1기	1	48,711	15,012	2010.05.24.	신고 누락	
	2007.1기 2008.1기	2	4,151	2,158	2010.06.30.	신고 누락	
	2007~2009.	1,482	653,803	255,216	2010.07.07.	신고 누락	9개자치구,시설공 단
	2009.1~2기	2	33,871	13,006	2010.08.31	신고 누락	체육진흥과
	2009.1기 2010.2기	2	26,936	8,450	2010.11.15.	신고 누락	시설공단 SH공사
2011	2007.1기~2009.2기	4	15,920	7,738	2011.06.14.	신고 누락	중구,구로구,서초구
	2008.2기	1	22,487	11,135	2011.10.07	신고 누락	용산구
	2007.1기	2	1,543	1,096	2011.12.19.	신고 누락	중구
	2009.1기~2010.1기	3	26,920	11,475	2011.08.18.	신고 누락	시설공단

연도	해당분기	건수	세액	가산세	납부일	납부사유	소관부서
2012	2007~2011	5	86,165	15,697	2012.02.29.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화정책과
	2008.1기~2010.2기	6	36,872	16,663	2012.08.30.	신고 누락	중구, 시설공단
	2008.1기~2010.1기	5	56,658	37,545	2012.12.14.	세금계산서 미발급	일자리정책과
2014	2011.2기~2014.1기	11	40,645	30,949	2014.10.01.	세금계산서 미발급	오목안디문화담당관
	2009.2기~2010.2기	262	11,701	7,992	2014.09.25.	신고 누락	SH공사
2015	2010.1기	1	14,420	10,714	2015.04.10.	매출 신고 누락	시설공단
2016	2016.3기	1	73,108	731	2016.10.25	세금계산서지연발급	서울산업진흥원
2017	2017.1기	1	43,020	430	2017.04.25	세금계산서지연발급	서울디지털재단

■ 지난년도수입(매각·임대수입 등의 체납금)

○ 재무국의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은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으로, 전년 예산대비 257.6%(50억 9천만원) 증액한 70억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8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과목구분				설 정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220 임시적세외수입			
	225 지난년도 수입			
		225-01 지난년도 수입		1. 출납이 완결된 년도에 속하는 사용료 등 세외수입

※ '17년까지 재무국(세무과)에 체납분 세입예산을 통합 편성하였으나, 체납부서의 징수 노력도 제고를 위해 '18년부터 체납발생 부서별 예산편성

◇ 연도별 지난년도수입 징수 실적 및 예산액 (단위 : 천원)

2016		2017		2018		2019		2020 편성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9월)	
4,332,226 (결산률)	15,051,648 (347.4)	8,721,866	16,147,961 (185.1)	1,055,525	3,609,020 (341.9)	1,976,322	1,330,018 (67.3)	2,989,866 (151.3)

○ 주요 증액 사유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3개조합의 사유지 점용에 따른 임대료 누락분 41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1심 승소, 항소심 일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적극적 응소를 통한 대처로 체납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재무국의 면밀한 대응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도 지난년도수입의 세입예산 증액 관련

- '18년도 성동구 재개발사업구역내 6개 조합에 대하여 성동구에서 임대료를 부과
- 이에 3개 조합이 성동구를 상대로 소제기하여 진행중이며, 그 외 3개 조합은 소송추이를 지켜보며 납부를 보류하고 있음.

조합명	소송 진행사항	체납액 (시세입액 기준)
옥수제13구역	x	33억원
금호제13구역	3심 진행중 → (1심, 2심 성동구 승)	6억원
금호제20구역	x	x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x	0.5억원
왕십리뉴타운제2구역	1심 종료 → (1심 성동구 승, 항소 여부 미정)	5억원
왕십리뉴타운제3구역	2심 진행중 → (1심 성동구 승)	x

- 성동구에서는 체납중인 4개 조합에 대하여 예금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3개 조합의 소송(각 1심~3심 진행중)에서 성동구의 승소 판결

○ 또한, 예산대비 결산률을 보면, 2017년 185.1%(74억 2천 6백만원 초과), 2018년에는 341.9%(25억 5천 3백만원 초과정수)의 결산률을 보이는데, 매년 세입예산안의 과소 추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는바, 면밀한 세입 분석을 통한 적정 예산편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020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0년 추계액 : 6,968,083천원
- 산출내역 : '16~'18년 평균 체납액에 3년간('16~'18년)의 평균 징수율 반영 및 특수요인 반영
 = (7,944,830천원 × 36.1%) + (특수요인) 임대료 등 체납액 41억원
- ※ 특수요인 :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3개조합 임대료

□ 종합적으로 2020년도 재무국의 세입 추계를 살펴볼 때,

-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주택 및 건물의 거래 감소를 예상하고도, 매매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세입을 증액편성하였는바, 투기지역 추가지정,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지속 확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 걱정하게 반영된 것인지 종합적인 분석과 함께, 적극적인 세입 목표 달성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 2019년까지 세대수 및 사업자수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바, 전년 대비 감액 편성(△1.0%, 5억 2천 5백만원)이 걱정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지방소득세는 시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으로,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결산률이 2년 연속 10% 내외로 초과 징수되고 있는바, 국세 추계에 의존한 추계보다는 서울시의 독자적 추계모델 개발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재산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가능한 세목임에도 매년 예산이 과소 추계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편성하고 있는바, 자치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적정예산 편성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지방재정분권과 관련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국가 정책에 의해 그 효과가 저하되고 있는바,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 맞게 온전한 세율인상이 될 수 있도록 재무국의 적극적인 대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 지속 하락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결산액 보전을 위해,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 세수보전을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세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편성하여 과소 징수될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입결손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교육재정보전금 환수 등 비정상적인 재정운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재무국의 과학적인 세입추계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3. 세출예산 검토

○ 재무국 소관 2020년 세출예산은 2조 7,089억 3천8백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2조 3,858억 9천6백만원 대비 13.5% 증액된 수준임.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5,251억 1천9백만원 대비 7.3%가 증액된 수준임.

가.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공통소요 행정물품의 수급관리와 반납물품 처분 및 재활용 등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자재창고 운영을 위해 전년(1,054백만원) 대비 6백만원을 감액한 10억4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400,000원*12월 = 4,800천원	○ 자재창고 무인경비 용역 400,000원*12월 = 4,800천원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000원 = 2,500천원	○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0,000원 = 2,500천원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000원 = 33,000천원	○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0,000원 = 33,000천원
	○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000,000원 = 50,000천원
	○ 계약담당 전문교육 700,000원*10명 = 7,000천원	
공공운영비	○ 자재창고 공과금 70,000원*12월*70% = 588천원	○ 자재창고 공과금 100,000원*12월 = 1,200천원
국외업무여비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50,000,000원 = 50,000천원	○ 지방재정효율화 관련 국외업무여비 50,000,000원 = 50,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물품관리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20,000,000원 = 20,000천원	○ 물품관리 및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추진 20,000,000원 = 20,000천원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15명*12월 = 69,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50,000원*115명*12월 = 69,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436,300,000원 = 436,300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150,000,000원 = 150,000천원 ○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230,530,000원 = 230,530천원	○ 복합기, 프린터기 등 사무기기 구매 436,300,000원 = 436,300천원 ○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 150,000,000원 = 150,000천원 ○ 노후 사무집기 교체 등 230,530,000원 = 230,530천원

○ ‘사무관리비’중 자재창고 운영을 위해 4,150만원(무인경비 용역 480만원, 자재창고 유지관리비 250만원, 반납물품 매각 및 물품이동 경비 3,300만원, 공과금 120만원 등)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8억 1,683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나바다 물품장터’(사무용품 재활용사이트)의 사용실적 미비 지적이 있자 관련 사이트를 폐쇄하고 ‘물품장터’ 게시판을 지난 2월 신설하였다고 하나, 2019년 10월 14일 기준 매달 28건 이상의 재활용 물품이 들어와 총 288건 1,403점의 재활용 물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장터’ 게시판에는 재활용 물품 현황을 2019년 현재 8건만 업데이트 되어 있는바, 재활용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물품보유현황은 매주 수요일 업데이트 된다고 하지만 정작 2019년 8건 업데이트

〈 서울시 물품장터 게시판 현황(2018. 10. 14. 기준) 〉

번호	제목	게시자	조회	종이로	게시일
1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안) 물품보유부서	김진영	57	2	2019-03-06
2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안) 물품보유부서	김진영	52	2	2019-03-06
20	자재창고 재활용 물품 안내	김윤태	10	0	2019-10-17
21	자재창고 물품	김윤태	9	0	2019-10-17
22	자재창고 재활용 물품 안내	김윤태	23	0	2019-09-05
23	자재창고 재활용 물품 안내	김윤태	24	0	2019-08-12
15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내.외.일.자) (미.연.1)	김진영	78	0	2019-04-24
16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2)	김진영	24	0	2019-03-24
17	반송백제박물건 반제박연구소 (제.는.토.네.카.로.리. (김.영.발.강.지.방.노.방))	유혜원	14	1	2019-03-18
15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1)	김진영	44	0	2019-04-10
14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1)	김진영	33	2	2019-04-03
13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2)	김진영	47	0	2019-03-27
11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3)	김진영	52	1	2019-03-20
10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1)	김진영	58	0	2019-03-14
9	자재창고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미.연.2)	김진영	63	0	2019-03-12
5	참고자료 - 물품 이동/거래 방법	김진영	25	2	2019-03-06
6	참고자료 - 물품의 수리/판매	김진영	30	2	2019-03-06
7	참고자료 - 물품 관리/관리방법	김진영	40	2	2019-03-06
8	물품보유현황 (안) 물품보유부서	김진영	57	2	2019-03-06
9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안) 물품보유부서	김진영	52	2	2019-03-06

물품장터		담당부서 : 재무과 (2133-3267)		30 레아칼럼		
제목	검색	상세검색		새로고침 ★즐거찾기 추가 게시판URL복사		
글쓰기	링크등록	이동	삭제	30개		
<input type="checkbox"/>	번호	제목	게시자	조회	종아요	게시일
<input type="checkbox"/>	공지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① 물품보유부서	김선영	57	2	2019-03-06
<input type="checkbox"/>	공지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② 물품필요부서	김선영	52	2	2019-03-06
<input type="checkbox"/>	22	자재창고 재활용 물품 안내	김윤태	10	0	2019-10-17
<input type="checkbox"/>	21	재활용 물품	김윤태	5	0	2019-10-17
<input type="checkbox"/>	20	자재창고 재활용 물품 안내	김윤태	23	0	2019-09-05
<input type="checkbox"/>	19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안내	김윤태	24	0	2019-08-12
<input type="checkbox"/>	18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4.24일자)★ [의견:1]	김선영	78	0	2019-04-24
<input type="checkbox"/>	16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2]	김선영	41	0	2019-04-24
<input type="checkbox"/>	17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캐논 토너 카트리지 : 검정,빨강,파랑,노랑)	유혜원	14	1	2019-04-18
<input type="checkbox"/>	15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1]	김선영	44	0	2019-04-10
<input type="checkbox"/>	14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1]	김선영	33	2	2019-04-03
<input type="checkbox"/>	13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2]	김선영	47	0	2019-03-27
<input type="checkbox"/>	11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3]	김선영	52	1	2019-03-20
<input type="checkbox"/>	10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1]	김선영	58	0	2019-03-13
<input type="checkbox"/>	8	재무과 자재창고 재활용 가능 물품 목록 [의견:2]	김선영	63	0	2019-03-13
<input type="checkbox"/>	5	참고자료 - 물품 이동처리 방법	김선영	25	2	2019-03-06
<input type="checkbox"/>	6	참고자료 - 경제적 수리한계	김선영	20	2	2019-03-06
<input type="checkbox"/>	7	참고자료 - 물품 관련 용어정리	김선영	40	2	2019-03-06
<input type="checkbox"/>	2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① 물품보유부서	김선영	57	2	2019-03-06
<input type="checkbox"/>	3	물품장터 이용방법 안내 ② 물품필요부서	김선영	52	2	2019-03-06

○ 재무국은 자재창고 물품에 대한 홍보 및 적극적 재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노후 집기 교체에 대한 면밀한 산출기초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같은 예산(2억3,053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관련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사업은 시유재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시설유지관리 및 시유재산 집단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45.4% 증액(325억 1천 8백만원)한 332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00,000	(x-) 700,000	(x-) 33,218,000	(x-) 32,518,000	(x-) 4,645
시설비	(x-) 700,000	(x-) 700,000	(x-) 33,218,000	(x-) 32,518,000	(x-) 4,645

○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구(舊) 북부지방법원 및 북부지방검찰청 청사를 매입하고자 첫회(총2회) 매입비인 시설비 325억 1천 8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 총 매입비용: 656억 3천 7백만원(전액시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시설비	○ 시설안전·수선비 200,000,000원 = 200,000천원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33,218,000천원
	○ 재산교환차액 등 500,000,000원 = 500,000천원	- 舊 북부지검,지법 매입 분납금 32,818,000,000 = 32,818,000천원
		- 시설안전수선비 100,000,000 = 100,000천원
		- 재산교환 차액 등 300,000,000 = 300,000천원
	증감사유	
	-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입비 반영 - 긴급수선을 요하는 시설 감소와 집단화에 따른 재산교환 차액 감소	

○ 재무국은 당초 대법원 및 법무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2013년부터 해당 재산에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창업지원센터 등 4개의 공공시설을 이미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는바, 현재 SH공사 소유인 해당 재산의 취득을 통해 동북권역의 경제활성화 및 안정적·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음.

〈 공공시설 설치 내역 〉

건 물 명		활용현황 (사업부서)	운영일	배 치 도
북부지검 (3개동)	본관, 별관동	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여성정책담당관)	운영 중 (’17.5~)	
	신관동	노원구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담당관)	운영 중 (’16.4~)	
	구치감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운영 중 (’19.7~)	
북부지법 (3개동)	본관동 별관동	서울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	운영 중 (’19.7~)	
	신관동	서울창업디딤터 (투자창업과)	운영 중 (’14.5~)	

※ 2017.12.05 : 구 북부지법 재산 소유권 이전(대법원→서울주택도시공사)

※ 2018.02.23 : 구 북부지검 재산 소유권 이전(법무부→서울주택도시공사)

- 다만, 매입 대상물을 취득하기도 전에 이미 조성하여 운영중인 서울시 공공 시설의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총 346억원의 시설비를 투입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지방재정법²⁾」에 따른 타당성 조사 의뢰가 반려되었으나, 기 투입 조성비를 포함하면 매입비용은 1,002억원(매입비 65,637백만원, 수선비 34,566백만원)에 달하는 수준임.
- 또한 본 시설물 취득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 전에 막대한 시설비(345억원)를 임의로 투입한 것은, 결국 의회의 의결권을 가 벼이 본 것이라 할 것인바, 재발 방지를 위한 재무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 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마지막으로, 본 사업 매입가액은 SH공사가 법무부·대법원과 교환계약을 체결 (법무부 '13.12., 대법원 '17.12.)할 당시의 협의매입액(감정평가금액 합 656억원) 그대로 SH공사로부터 매입하려는 것으로, 감정평가 후 장기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볼 때, 협의매입 대상자로서 서울시 투자기관인 SH공사에 부당하게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매입방법: SH공사가 대법원/법무부로부터 취득한 가격을 고려하여 협의 매입 - 구 북부 지청 및 지원 재산 취득 계획(자산관리과-11141(2013.9.14.))

〈 매입 예정금액 산출 근거 〉

(단위 : 백만원)

지출 항목	금액	산출 근거
계	65,636	
재산매입비	65,636	감정평가액(SH공사, '13.9 / '16.11)

※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무상사용허가 받아 사용 중이나, 무상사용계약 시 서울시가 동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연간 13억원으로 추정됨(재산가액의 2.5%로 산정 기준)

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 사업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7% (1억 7천 2백만원) 증액한 24억 1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2,247,130	(x-) 2,247,130	(x-) 2,419,349	(x-) 172,219	(x-) 7
출연금	(x-) 2,247,130	(x-) 2,247,130	(x-) 2,419,349	(x-) 172,219	(x-) 7

- 주요 증액 사유는, 재무국은 지방세 관계법령³⁾으로 정한 일정비율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액의 0.015%)에 따른 출연액 산정으로, 매년 세입 규모 순증에 따라 출연금 산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8년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688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 본청에서 출연한 금액은 141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0.4%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168억원으로 총 출연금의 24.4%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국(A)	68,756	3,940	4,597	6,587	7,712	7,136	8,276	7,570	12,102	10,844
서울시전체 (B=C+D)	16,797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10	2,631
시본청(C)	14,051	795	953	955	1,975	1,446	1,636	0	4,044	2,247
자치구(D)	2,74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6	383
시본청 비율 (C×100)	20.4	20.2	20.7	14.5	25.6	20.3	19.8	0.0	33.4	20.7
서울시 전체 비율 (B/A×100)	24.4	24.6	24.7	19.4	29.9	24.6	23.6	4.8	36.4	24.3

- 결산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으나,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법령 개정 노력 등이 부족한 사유로, 2020년 출연금 관련 출연동의안은 제28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바 있음.

※ 재무국은 출연비율 인하 개선안을 건의한바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연구원 청사매입비 상황이 완료될 때까지 현행 출연률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함.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 결산상 세출예산 126억원 중 2017년 9월 청사매입에 따른 부채상환액 비중이 36.8%(46억 2천만원)에 달하는 반면, 연구 등 사업비는 23.4%(29억 4천만원)에 그치는 등 연구원의 연구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대한 결산상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지방세연구원 2018년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예산액(A)	지출액(B)	차액(C=A-B)
지출총액	13,429,654,364	12,571,824,362	857,830,002
인건비	4,156,483,671	4,073,251,966	83,231,705
사업비	3,595,340,818	2,944,163,749	651,177,069
경상경비	798,123,622	726,614,994	71,508,628
시설비	235,769,395	207,467,750	28,301,645
청사이전	4,620,397,693	4,620,325,903	71,790
예비비	23,539,165	0	23,539,165

※ 주요 예산 절감 및 조정 내용 : 연구사업 수행 4.0억원(연구과제수행 2.1억원, 연구센터비 0.2억원 등), 자치단체협력지원 2.5억원(세무공무원 교육 1.1억원 등)

- 또한,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연구직이 18명 증원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까지 정원(38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바, 지방세 관련 조사·연구·교육 등 연구원의 고유 목적사업을 감안할 때 연구원 외연 확대보다는 목적에 충실한 내실있는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인력 운용 현황〉

2019.9.현재

구분	총계	원장	부원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시설관리직
정원	92	1	1	2	53	5	28	2
현원	66	0	1	2	38	2	22	1

- 정원 92, 현원 66명(위촉연구원·과건공무원 등 11명 별도)

※ 전년 대비 현원 26명(연구직 18, 사무직8) 증가

- 한편, 법이 아닌 시행령⁴⁾상 강제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만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원장에 최근 행정안전부 간부가 취임하는 등,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은 출연금 출연에 앞서, 출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은 시 세입 사무의 자치구 위임 징수로 인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자 평가를 통해 자치구에 인센티브로써 매년 50억원의 ‘자치구기타 재원조정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세출 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5,000,000	(x-) 5,000,000	(x-) 5,000,000	(x-) 0	(x-) 0
자치구기타재원 조정비	(x-) 5,000,000	(x-) 5,000,000	(x-) 5,000,000	(x-) 0	(x-) 0

※ 포상금 1억원 별도 교부

- 재무국은 본 사업에 대하여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의 3가지 분야에 대한 평가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동기 유발을 통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4)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이하 생략)

○ 2018년 사업 결과를 보면, 25개 구청 중 24개 구청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포상금을 포함할 경우 25개 구청 모두에게 재원조정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사실상 고르게 나누어 차등 분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

〈 2018년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 분야	
		재원조정비	포상금	재정보전금	시상금	재원조정비	포상금
합 계	5,100,000	2,400,000	80,000	1,000,000	10,000	1,600,000	10,000
종 로	198,860	95,000	3,110	35,000	350	65,000	400
중 구	158,600	75,000	2,800	80,000	800		
용 산	281,910	142,000	3,860	35,000	350	100,000	700
성 동	102,700		2,000			100,000	700
광 진	240,310	106,000	3,310	50,000	500	80,000	500
동 대 문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중 량	259,410	95,000	3,110	80,000	800	80,000	500
성 북	226,360	142,000	3,860			80,000	500
강 북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도 봉	279,510	95,000	3,110	80,000	800	100,000	600
노 원	2,000		2,000				
은 평	214,010	95,000	3,110	50,000	500	65,000	400
서 대 문	229,110	95,000	3,110	50,000	500	80,000	500
마 포	225,160	106,000	3,310	35,000	350	80,000	500
양 천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강 서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구 로	102,750		2,000	35,000	350	65,000	400
금 천	37,350		2,000	35,000	350		
영 등 포	256,560	122,000	3,560	50,000	500	80,000	500
동 작	327,260	142,000	3,860	80,000	800	100,000	600
관 악	276,660	122,000	3,560	50,000	500	100,000	600
서 초	125,560	122,000	3,560				
강 남	145,860	142,000	3,860				
송 파	292,060	142,000	3,860	80,000	800	65,000	400
강 동	245,260	106,000	3,310	35,000	350	100,000	600

○ 또한, 사업 예산 50억원 중 가장 많은 재정지원비를 받은 용산구에 대한 지급액이 2억 7천 7백만원에 그치는 등 모든 구에 나눠주기식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치구재원조정비로 지급되는 재원으로써,

자치구 세무공무원의 경쟁을 유인할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으로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재무국은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본 사업은 당초 행정국의 “시·자치구 공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2013년도 행정국으로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된 후 현재까지 부시장 방침에 근거하여 재무국에서 운영해옴으로써,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포상금을 조례상 근거 없이 편성·집행해오고 있는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포상금은 『공직선거법』 위배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근거 없는 예산의 편성은 법령상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바, 해당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됨.

2013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행정과-663(2013.1.8.))

※ '13년 시세입 징수실적 평가('12년 20억원)는 재무국 별도 편성

마.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을 자치구로 파견하여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 (5,804백만원) 대비 7천9백만원 감액한 50억5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 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5,083,954	(x-) 5,083,954	(x-) 5,004,960	(x-) △78,994	(x-) △1
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	(x-) 5,083,954	(x-) 5,083,954	(x-) 5,004,960	(x-) △78,994	(x-) △1

※ 감액한 사유는 기존 인력 인건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기관평가 등급상향에 따른 성과급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퇴직(19년 현재 57명, '20년중 4명 퇴직 예정)으로 인한 4명의 인건비 감소를 들고 있음.

- 최근 3년간 변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 73,394대, 2018년 67,603대, 2019년 9월말 현재 48,329대로 해마다 영치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징수실적은 2016년 180억원, 2017년 160억원, 2018년 130억원, 2019년 9월말 현재 98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자치구별로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예산 집행 실적 및 정산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2억9천2백만원, 2018년 6천9백만원을 정산 반납하였음.

〈 최근 3년간 변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 〉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합계	73,394	16,146	67,603	13,219	48,329	9,888
총 로 구	1,218	254	991	236	837	203
중 구	1,772	397	1,485	309	1,223	250
용 산 구	2,268	370	2,078	426	1,418	281
성 동 구	3,161	526	2,161	469	2,144	415
광 진 구	2,665	473	2,406	402	1,505	273
동 대 문 구	2,624	637	2,248	371	1,832	388
중 량 구	2,802	645	2,718	474	2,081	372
성 북 구	2,868	560	2,332	441	2,073	402
강 북 구	2,688	484	2,369	448	2,003	388
도 봉 구	2,202	412	1,953	402	1,616	311
노 원 구	3,053	526	2,041	420	2,116	426
은 평 구	3,820	687	3,538	492	2,037	376
서 대 문 구	2,617	523	1,736	294	1,215	219
마 포 구	2,752	630	2,404	342	1,766	285
양 천 구	1,922	558	2,384	530	1,788	387
강 서 구	4,093	1,046	4,121	872	2,588	484
구 로 구	1,947	466	2,663	545	2,054	426
금 천 구	2,782	495	2,233	406	1,528	303
영 등 포 구	3,458	687	2,997	565	1,936	402
동 작 구	2,876	646	2,567	561	2,069	50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관 약 구	3,466	828	3,319	691	2,638	548
서 초 구	4,522	1,521	4,641	1,053	2,492	688
강 남 구	5,248	1,014	4,863	1,065	3,130	622
송 파 구	3,194	1,104	4,062	825	1,815	495
강 동 구	3,376	658	3,293	580	2,425	443

※ 출처: 2019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3쪽.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내역 및 상세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비고(반납)
계	15,424	13,456	
2019년 (9월말 현재)	5,084	3,408	-
2018년	5,101	5,101	69
2017년	5,239	4,947	292

출처: 2019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94쪽.

- 한편, 영치 및 징수실적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의 경우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단 직원보다 세무직의 포상금 수령이 많으며, 자치구마다 편차가 심함.

<최근 3년간 영치 포상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세무직	공단	세무직	공단	세무직	공단	세무직	공단
합계	314,561	173,880	112,371	70,879	123,029	62,247	79,161	40,754
종로구	3,588	2,616	1,506	970	1,278	1,074	804	572
중 구	3,688	7,376	1,770	3,540	1,194	2,387	724	1,449
용산구	3,636	5,179	935	1,870	910	2,237	1,791	1,072
성동구	7,994	3,997	2,687	1,343	3,265	1,633	2,042	1,021
광진구	6,162	6,791	1,506	3,199	3,168	2,402	1,488	1,190
동대문	13,034	7,688	4,427	3,541	4,869	2,389	3,738	1,758
중랑구	17,681	9,695	5,712	2,646	7,117	4,650	4,852	2,399
성북구	4,397	5,336	1,707	2,561	1,543	1,628	1,147	1,147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세무직	공단	세무직	공단	세무직	공단	세무직	공단
강북구	8,367	7,830	3,658	3,003	1,576	1,757	3,133	3,070
도봉구	4,340	9,544	1,935	3,348	1,156	3,031	1,249	3,165
노원구	12,540	5,923	2,146	2,146	4,818	1,472	5,576	2,305
은평구	8,171	1,488	2,603	1,102	3,772	386	1,796	0
서대문	8,132	2,821	2,493	1,312	3,590	961	2,049	548
마포구	11,528	3,776	6,239	1,274	2,940	1,234	2,349	1,268
양천구	3,529	6,229	814	2,441	942	2,526	1,773	1,262
강서구	17,194	9,564	8,450	4,242	6,843	3,421	1,901	1,901
구로구	8,356	9,301	3,699	5,236	2,761	2,761	1,896	1,304
금천구	17,623	10,034	5,302	3,444	8,060	4,144	4,261	2,446
영등포	13,311	4,613	5,240	1,976	5,015	1,741	3,056	896
동작구	13,396	2,067	5,247	751	4,839	531	3,310	785
관악구	27,080	5,665	12,459	3,879	8,633	977	5,988	809
서초구	34,277	7,229	14,788	2,781	13,545	2,883	5,944	1,565
강남구	19,017	20,420	7,040	7,036	8,178	8,065	3,799	5,319
송파구	35,525	12,880	8,205	6,099	16,436	4,602	10,884	2,179
강동구	11,995	5,818	1,803	1,139	6,581	3,355	3,611	1,324

출처: 2019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04쪽.

- 50억원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과 징수실적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의 합리적 재검토와 함께 징수실적 향상 및 자치구별 편차 축소 방안 마련과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실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변호관 영치업무지원 수행과 관련한 조사 감독 실적 〉

구분	월 1회 실적 감독	자치구 출장 감독	비고
계	34회	6회	- 자치구별 영치목표 - 매월 진도율 관리 - 부진 자치구 감독
2019.1~9월	9회	2회	
2018년	12회	2회	
2017년	13회	2회	

바.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사업은 체납시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시민에게는 기타보상금을 제공하여 체납세입 징수실적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2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2,222,482	(x-) 2,222,482	(x-) 2,222,482	(x-) 0	(x-) 0
사무관리비	(x-) 3,600	(x-) 3,600	(x-) 3,600	(x-) 0	(x-) 0
기타보상금	(x-) 30,000	(x-) 30,000	(x-) 30,000	(x-) 0	(x-) 0
포상금	(x-) 2,188,882	(x-) 2,188,882	(x-) 2,188,882	(x-) 0	(x-) 0

○ 재무국 체납 징수목표 달성률 추이를 보면, 2018년도 결산 결과 목표 달성률은 85.7%로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바, 징수실적은 징수율뿐만 아니라 징수액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지난년도 시세 징수결정액/예산액/결산액〉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징수결정액(A)	1,276,535	1,416,742	1,328,201	1,256,009	994,381
예산(징수목표)액(B)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결산(수납)액(C)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률(C/B)	98.5	105.4	89.8	85.7	(100.4)
징수율(C/A)	14.1	16.8	15.8	16.1	(22.4)

○ 또한, 재무국은 강력한 체납시세 징수를 통하여, 조세정의 실현을 추구한다고는 하나, 서울시 시세 세입규모(2018년 17조 8171억원)로 볼때, 체납액 징수 실적은 1.2%(2,094억원)에 그쳐, 세입 규모면에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며, 2018년 3,838억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체납액의 징수결정액(총체납액) 규모는 9,944억원에 달하는 실정임.

※ 2018년도 말 결손처분액은 체납액의 30.6%(3,838억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치임.

〈 최근 5년 시세세입규모 대비 체납시세징수액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세세입규모	13,249,613	15,624,421	16,569,317	17,817,124	19,103,261
체납시세 징수액	177,187	179,681	237,356	209,405	200,327
비율	1.3	1.2	1.4	1.2	1.0

※ 총 시세 세입규모에서 지난년도 시세 세입규모는 1%를 상회하는데 그치고 있음.

○ 그러나 재무국은 체납징수 여건악화라는 명분으로 2017년 이후 지속하여 징수목표액을 하향 편성하고 있음에도,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결산상 징수실적(85.7%, 2,028억원)은 오히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 지난년도 시세 예산편성 및 징수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9년(전망)
예산액	182,489	225,248	233,297	236,597	221,567
예산 증감률	-	23.4	3.6	1.4	-6.4
징수액	179,681	237,356	209,405	202,843	(222,549)
결산율	98.5	105.4	89.8	85.7	(100.4)

- 또한 2020년 예산편성액도 전년대비 0.2%(511백만원) 상향하는데 그쳐, 체납세액 징수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등 징수활동이 침체되어 있는바,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 체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인적쇄신 등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재무국에서는 자치구에, 본 사업 포상금 이외에도 시세의 자치구 위임징수 처리비로 징수교부금을,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 사업에 따른 자치구재원조정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
- 첫째, 징수교부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서울특별시세에 대한 처리비로 시세 납입액의 3%를 교부하는 것으로, 2018년 자치구에 교부한 징수교부금 규모는 4,199억원 수준임.

< 최근 3년간 자치구 징수교부금 교부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결산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시세 징수교부금	346,794	346,794	0	377,990	377,990	0	419,907	419,907	0

<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군·구 내의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이하 "시·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군·구가 부담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군·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군·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군·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한편, 2017년 12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로, 현재의 징수교부금 교부율 3%와 비교하여 징수비용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 > (단위 : %)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로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산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동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진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소유분 자동차세	평균
중랑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북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북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봉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노원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평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포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천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서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로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천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작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악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초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남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파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동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 둘째,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세 위임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한 포상금 규모는 2018년도 기준 16억 4천만원(체납징수 15억 7천 8백만원, 세원발굴 6천 4백만원) 수준임.

< 최근 5년간 자치구 포상금 지급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계	138,626	1,921	119,163	1,958	198,004	1,932	173,444	1,646	160,959	1,578
종로구	4,466	53	4,252	55	4,519	47	4,522	49	3,379	41
중구	5,357	53	3,188	40	6,333	47	4,062	48	3,826	54
용산구	3,784	52	3,141	58	5,745	61	5,447	62	5,394	56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징수액	지급액
성 동 구	3,169	48	3,549	65	5,208	64	6,007	67	5,255	56
광 진 구	3,697	69	4,346	72	6,351	68	5,178	51	5,340	57
동 대 문 구	3,526	58	2,874	53	8,064	62	5,700	65	4,405	48
중 랑 구	5,326	79	4,364	82	6,169	81	5,483	56	4,958	49
성 북 구	4,696	71	4,760	58	7,045	69	7,076	43	6,515	48
강 북 구	3,665	45	3,099	50	4,564	45	4,324	44	3,959	36
도 봉 구	3,232	45	3,138	50	5,658	46	4,206	39	4,275	38
노 원 구	4,621	71	4,883	74	7,350	63	7,481	73	6,841	60
은 평 구	4,671	78	4,282	86	7,087	99	6,239	65	6,415	68
서 대 문 구	3,254	48	1,998	25	4,509	39	4,289	42	4,136	39
마 포 구	5,927	88	4,899	90	6,986	80	6,306	75	6,095	70
양 천 구	5,601	80	6,281	89	9,587	73	6,459	37	6,343	45
강 서 구	6,432	95	5,694	87	9,382	91	10,943	51	8,542	61
구 로 구	5,474	72	4,322	69	8,287	75	6,796	39	7,313	62
금 천 구	3,453	67	2,701	51	4,343	47	4,801	39	3,818	30
영 등 포 구	4,843	65	4,849	73	7,484	70	7,176	66	6,444	66
동 작 구	4,156	53	3,300	47	6,082	55	5,858	73	5,219	52
관 악 구	5,111	78	4,379	85	6,879	73	6,534	68	6,491	64
서 초 구	11,639	135	8,114	149	15,369	152	11,085	124	10,329	107
강 남 구	16,648	193	14,232	227	25,151	212	18,908	184	17,000	183
송 파 구	10,064	143	7,886	150	12,973	166	12,128	123	12,026	120
강 동 구	5,814	82	4,632	73	6,879	47	6,436	63	6,641	70

〈 세원발굴 포상금 지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합 계	시	자치구
2017	68,393	8,543	59,850
2018	99,360	35,641	63,719
2019.10.	96,726	34,976	61,750

○ 셋째, 재무국에서는 시세의 자치구 위임 징수에 따른 시세임 증대를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을 유인하고자 시세 누락세원 발굴 및 체납시세 징수 실적 등을 지표로 하여, 행정국 소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기타재원조정비’ 50억원과 ‘포상금’ 1억원을 매년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음.

〈 2018년도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합 〉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 분야	
		재원조정비	포상금	재정보전금	시상금	재원조정비	포상금
합 계	5,100,000	2,400,000	80,000	1,000,000	10,000	1,600,000	10,000
총 로	198,860	95,000	3,110	35,000	350	65,000	400
중 구	158,600	75,000	2,800	80,000	800		
용 산	281,910	142,000	3,860	35,000	350	100,000	700
성 동	102,700		2,000			100,000	700
광 진	240,310	106,000	3,310	50,000	500	80,000	500
동 대 문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중 랑	259,410	95,000	3,110	80,000	800	80,000	500
성 북	226,360	142,000	3,860			80,000	500
강 북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도 봉	279,510	95,000	3,110	80,000	800	100,000	600
노 원	2,000		2,000				
은 평	214,010	95,000	3,110	50,000	500	65,000	400
서 대 문	229,110	95,000	3,110	50,000	500	80,000	500
마 포	225,160	106,000	3,310	35,000	350	80,000	500
양 천	210,060	106,000	3,310	35,000	350	65,000	400
강 서	226,310	122,000	3,560	35,000	350	65,000	400
구 로	102,750		2,000	35,000	350	65,000	400
금 천	37,350		2,000	35,000	350		
영 등 포	256,560	122,000	3,560	50,000	500	80,000	500
동 작	327,260	142,000	3,860	80,000	800	100,000	600
관 약	276,660	122,000	3,560	50,000	500	100,000	600

구분	합계	시세종합징수분야		세원발굴 실적		체납징수 분야	
		재원조정비	포상금	재정보전금	시상금	재원조정비	포상금
서 초	125,560	122,000	3,560				
강 남	145,860	142,000	3,860				
송 파	292,060	142,000	3,860	80,000	800	65,000	400
강 동	245,260	106,000	3,310	35,000	350	100,000	600

○ 종합해 보면, 서울특별시 시세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현 체계상, 수입자인 자치구에 대한 업무 처리비와, 시세 세원증대 유인을 위한 포상금 등으로 매년 4,266억원(2018년 기준)을 교부하고 있음.

※ 재무국 소관 시세 위임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액 종류 및 금액(2018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징수교부금	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
419,907	5,100	1,642

○ 또한,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교부액 또한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는바, 시세의 자치구 위임징수로 인한 수입자의 적극적 세입증대 활동 유인책으로 매년 막대한 자원을 유출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주권 실현을 위해 서울시가 시세입징수의 주체로서 시세를 직접 징수하는 방안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한 점진적 방안으로 징수교부금 대비 징수비용이 낮은 서울 동남권역(강남, 서초, 송파구)에 시세징수사무소의 시범적 설치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